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

UNCITRAL W/G III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 병 준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⑧-2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Ⅱ)
**UNCITRAL W/G III 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 병 준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Analysis to the specific languages of generic procedural rules and the regulation for consumer arbitration, conducted by Working Group III of UNCITRAL

연구자 :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ee, Byung Jun

2013. 12. 13.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배 경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실무작업반 III (Working Group III)에서는 2010년부터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기본 방침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기본방침은 크게 일반절차규칙(General Procedure Rules)의 초안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neutrals), ODR 제공자의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viders),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칙(Substantiv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disputes) 그리고 국제 집행방법(Cross-border enforcement mechanism)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문건이며, 이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참가국으로서, 대한민국 대표단 중 한명인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차례 의장을 맡는 등, 제도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 목 적

- 현재까지 진행된 ODR 관련 배경 및 논의내용을 서술하여 정리하고, 2013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27차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및 분석함. 또한 2013년 하반기에 진행될 제28차 회의의 사전문건을 번역하고 정리하여, 이를 통해 제28차 회의 및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논의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II. 주요 내용

□ UNCITRAL ODR 논의 전개과정

-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소액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제시되었음. 2010년에 UNCITRAL은 실무작업반 III에게 국경을 넘어선 소액·대량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게끔 지시함.
- 위임받은 사항에 따라 실무작업반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분쟁해결의 실체법·절차법적 원칙들을 확인하고 이를 성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함.

□ ODR의 필요성

- 기존의 재판에 의한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더 나아가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제됨.

-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인 조약이 이 분야에는 없어 B2C 거래에 있어 중재판정의 집행이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지적됨.
- 따라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대량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B2B 또는 B2C 분쟁을 세계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집행력의 부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27차 회의까지 ODR의 주요 쟁점

- 당사자들이 ODR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에 기속되는지가 문제됨. 즉,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ODR 절차의 결과가 당사자를 기속하는지 여부가 나뉘게 됨.
- 이에 따라 제26차 회의까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ODR은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협상-촉진된 합의-중재로 이루어진 Track I, 그리고 협상-촉진된 합의로 이루어진 Track II의 두 가지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지게 됨.
- 법적 강제집행이 시간, 공간, 비용적 이유로 쉽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ODR은 법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ODR 판정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표시인 신뢰마크(Trustmark)를 사용하여 시장적 접근을 통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채택함.

Ⅲ. 기대효과

- 국제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소비자보호법제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확립되어나갈지 예측해볼 수 있음.

▶ 주제어 : UNCITRAL, 소비자보호, 소비자분쟁, 온라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중재, 소비자중재, 강제집행, 약관규제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Background

- From 2010,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hereafter UNCITRAL) Working Group III (hereafter W/G III) has discussed to seek for a way to resolve online dispute relating to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cluding business-to-business (B2B) and business-to-consumer (B2C) transactions. The basic concept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to solve online dispute in online.
- Basic policy is to make the draft of general procedural rules (hereafter the Rules), 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neutrals, 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viders), Substantiv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disputes, and Cross-border enforcement mechanism. These documents are dealt with the issue, and are continued to be discussed.
- Korea is currently one of the major participants. Furthermore, one of the Deleg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senior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Su-geun Oh is acting as the chairman many times, including establishing systems that out perform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bjectives

- Describing and summarizing ODR processes conducted so far and the relevant backgrounds. And it is not only to analyze the twenty-seventh session of W/G III, but also to translate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twenty-eighth for preparing the next sessions.

II. Main Contents

Discussion development of UNCITRAL ODR

- The early idea of resolving small-size dispute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was already in 2000. The committee of UNCITRAL has mandated Working Group III to research online dispute resolution relating to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cluding small size and high volume.
- The Working Group has found the substantial rules and the procedural rules, and has made the text after Dec. 2010. The session was held six times until now.

Necessity of ODR

-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by trial is too expensive and not effective in time. Furthermore, it is doubtful to be enforced when a dispute is resolved.
- There is no any international treaty to enable an enforcement by arbitration award, so that it is uncertain to be executed in B2C transaction.

- Thus, it is expected to give a possibility of enforcement, so that a fast resolve will be possible by using global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B2B and B2C transactions.
- Main issues from the start to the twenty-seventh session.
 - It is discussed that the parties will be bound in the result of ODR process, i.e. the binding effect of an arbitration award will be divided by the position of country to admit an effect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 Various disputes had been arise until the twenty-sixth session, consequently ODR process was divided two different and separate set of Rules. Track I is consisting of three stages (negotiation - facilitated settlement - arbitration). On the other hand, Track II has only two stages (negotiation - facilitated settlement).
 - It seems that enforcement is hard because of its cost, time and space problems. Thus, ODR has private enforcement by using trustmarks in market, so that it forces the parties in mind.

III. Expected Effect

- It is possible to expect and anticipate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ternationally, by reviewing history of ODR process and prepare its future session.

► **Key Words :** *UNCITRAL,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Dispute, Consumer Arbitr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Enforcement,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목 차

| | |
|--|----|
| 요 약 문 | 3 |
| Abstract | 7 |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3 |
| 제 2 장 UNCITRAL ODR W/G III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 15 |
| 제 1 절 ODR W/G의 작업 범위 | 15 |
| 제 2 절 ODR W/G의 주요 아젠다 | 19 |
| 1. UNCITRAL에서 제시하는 논의 배경 | 19 |
| 2.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실체법의 불통일에 따른 법적규제의 혼란 | 20 |
| 3. UNCITRAL 관련 논의에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2가지 시각 .. | 22 |
| 제 3 절 ODR 절차의 기본구조와 중요쟁점 | 24 |
| 1. 국제전자상거래 ODR와 관련된 기본관념과 그 시각 | 24 |
| 2. 소비자법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 | 34 |
| 제 3 장 UNCITRAL ODR W/G의 제27차 회의 내용 분석 | 39 |
| 제 1 절 ODR W/G의 제27차 회의 아젠다 개관 | 39 |
| 제 2 절 ODR 절차의 논의방향 (B2B로 제한, 2트랙모델 유지) .. | 40 |
| 1. 유럽연합의 사전문건 제출 및 입장 | 40 |
| 2. 중재단계에 대한 논의 | 47 |

| | |
|---|-----|
| 제 3 절 ODR 절차규칙(안) 분석 | 51 |
| 1. 초안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 51 |
| 2. 초안 제8조(촉진된 합의) | 61 |
| 3. 초안 제8조 bis.(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 | 65 |
| 4. 초안 제9조(중재) | 68 |
| | |
| 제 4 장 UNCITRAL ODR W/G의 제28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 79 |
| 제 1 절 ODR W/G의 논의 방향성 검토 | 79 |
| 1. 검토 예상 조문 | 79 |
| 제 2 절 ODR W/G의 제28차 회의 대응 전략을 위한 사전문건 번역 | 86 |
| 1. Track I에 관한 실무문서 123 번역 | 87 |
| 2. Track II에 관한 실무문서 123/Add.1 번역 | 113 |
| | |
| 제 5 장 결 론 | 129 |
| | |
| 참 고 문 헌 | 131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이하 W/G) III에서 진행 중인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상반기에 개최된 제27차 UNCITRAL W/G III 회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년 하반기에 다가오는 제28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을 검토하자면, 첫 번째로 UNCITRAL W/G III에서 진행 중인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 사항들의 개선과 진화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국가의 입장들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대립되었던 입장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두 번째, 2013년 상반기에 개최된 제27차 UNCITRAL W/G III 회의와 관련된 문건들을 분석하여 다가오는 차기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27차 회의가 열리기 전후로 공개된 자료에 대한 번역 및 검토, 이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제27차 UNCITRAL W/G III 회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분쟁해결(ODR)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주요국들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 UNCITRAL W/G

* 이 연구는 한종현(사단법인 국가경쟁력연구원) 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하였음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Ⅲ의 결과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본 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및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 UNCITRAL ODR W/G III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제 1 절 ODR W/G의 작업 범위¹⁾

2010년부터 UNCITRAL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B2B 및 B2C로 이루어지는 소액의 대량 피해사건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을 위한 법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의 제43차 회의(2010년 6월 21일 - 7월 9일)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과물이 협약, 모델법, 가이드라인 등 어떠한 법적 형태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작업이 진행된 후에 확정하기로 하였다.²⁾ 그리고 UNCITRAL 제44차 회의(2011년 6월 27 - 7월 8일)에서는 C2C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소비자보호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³⁾

국제적인 소액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존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해결이 오래 걸린다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이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피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수단을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실무작업반 III에서 일반절차규칙(Generic procedural rules)의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립적인 제3자의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Guidelines and

1) 이하의 논의는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 22권 제2호(2012. 8.) 참조.

2)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third session (New York, 21 June - 9 July 2010) Meeting records, para. 257 (A/65/17).

3)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fourth session (27 June - 8 July 2011), para. 218 (A/66/17).

minimum requirements for neutrals), ODR 제공자의 가이드라인과 최소 요건(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viders),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칙(Substantiv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disputes) 그리고 국제 집행방법(Cross-border enforcement mechanism)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문건들과 일반절차규칙 초안의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한 후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⁵⁾

제33차 회의(2000. 06. 12. - 07. 07., 뉴욕)에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 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중재 등을 포함한 미래의 작업에 관한 제안들을 예비적으로 교환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미래의 작업은 점차 증가하는 온라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상행위의 양 당사자 및 소비자 등이 중재와 조정 등의 분쟁해결기술을 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전자상거래 이용이 점차 소비자와 상행위의 양 당사자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은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사용하는 것을 공공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조화를 도모하기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제34차 회의(2001. 06. 25. - 07. 13., 비엔나)와 제35차 회의(2002. 06. 17. - 28., 뉴욕)에서, 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미래

4)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third session (A/CN.9/721), para. 140,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fourth session, para 151 (A/CN.9/739).

5) 좀 더 자세한 현황내용은 Louis F. Del Duca, Colin Rule & Zbynek Loebel, "Facilitating Expansion of Cross-Border E-Commerce-Developing a Global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Lessons Derived from Existing ODR Systems - Work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5-2011, pp. 23-27 참조.

작업이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넘어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무작업반 II (중재와 조정)은 실무작업반 IV (전자상거래)가 이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미래 작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제39차 회의(2006. 06. 19. - 07. 07., 뉴욕)부터 제41차 회의(2008. 06. 16. - 07. 03., 뉴욕)에 이르기까지, 위원회는 온라인 분쟁해결 분야가 반드시 미래 작업의 한 의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주목하였다.⁶⁾

제42차 회의(2009. 06. 29. - 07. 18., 비엔나)에서, 위원회는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미래 작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추천을 받았다. 이 연구는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분쟁의 유형을 분류하며,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규정 초안의 적절성, 특정 온라인 분쟁해결 제공자의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여부, 관련 국제규약을 통해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의 강제집행효력 등의 주체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분쟁해결분야에 대한 미래 작업 제안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사무국에게 해당 제안의 기초연구 준비를 지시했으며, 동시에 온라인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콜로кви움을 개최하는 지원을 허가하였다.

제43차 회의(2010. 06. 21. - 07. 09., 뉴욕)에서, 위원회는 UNCITRAL이 당해 분야에 대해 수행하는 그 어떤 종류의 작업도 UNCITRAL 기구가 채택한 전자상거래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과 같은 작업들과 같이, 사업자-사업자 및 사업자-소비자 환경 모두에 적용되도록, 일관성 있는 포괄적인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콜로кви움을 통해 위원회는,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

6) 이하의 내용은 A/CN.9/WG.III/WP.123 참조.

수단으로 전통적 법제의 법적 구제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알았고, (국경을 넘어선 분쟁의 빠른 해결과 강제집행을 제공하는) 해결책은 사업자-사업자 및 사업자-소비자의 소액 대량 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속에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 분야에 대한 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콜로키움에서 밝혀진 주제들에 대해 필요한 관심을 둘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당해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업자-사업자 및 사업자-소비자를 포함하는,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에 관한 온라인 분쟁해결 분야에 관한 작업에 착수할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실무작업반은 당해 주제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그에 대한 법적 기준 및 형식을 준비하기로 결정되었다.

제44차 회의(2011. 06. 27. - 07. 08., 비엔나)에서, 사업자-사업자 및 사업자-소비자 거래를 포함하는,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B2B 및 B2C 거래 포함)와 관련된 온라인 분쟁해결 분야에 관해 실무작업반이 법적 기준을 확립한다는 위임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실무작업반으로 하여금 위임사항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소비자-소비자 거래까지 포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소비자 관계까지 규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작업이 소비자보호 법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45차 회의(2012. 06. 25. - 07. 06.)에서, 위원회는 실무작업반이 심의 내내 소비자보호에 유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실무작업반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분쟁해결의 인지된 이익과, 분쟁 후 상황이나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영역 내에서의 경제적 성장에도 주목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실무작업반은, 절차의 일부로서 중재 단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와 그들이 분쟁 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장래의 위원회 회기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실무작업반은 심의를 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그리고 분쟁 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의 효과를 계속 검토해야만 한다 아울러 실무작업반은 온라인 분쟁해결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게끔 하기 위해 중재 및 중재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탐색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실무작업반의 위임분야가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소액 대량거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22차 회의(2010. 12. 13. - 17., 비엔나)에서, 실무작업반 III이 국경을 넘어선 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⁷⁾ 실무작업반은 사무국에게, 장래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이 고려할 일반절차규정의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⁸⁾, 제23차 회의(2011. 05. 23. - 27., 뉴욕)에서 제26차 회의(2012. 11. 05. - 09., 비엔나)에 이르기까지, 실무작업반은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기초안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절차규정 초안을 작성하는 준비를 계속해왔다.⁹⁾

제 2 절 ODR W/G의 주요 아젠다¹⁰⁾

1. UNCITRAL에서 제시하는 논의 배경

UNCITRAL 실무작업반 내에서의 논의와 문건에 의하면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표준적인 규율, 특히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B2B와

7) A/CN.9/WG.III/WP.105

8) A/CN.9/116, para. 115(a)

9) A/CN.9/WG.III/WP.107, A/CN.9/WG.III/WP.109, A/CN.9/WG.III/WP.112 and its addendum, and A/CN.9/WG.III/WP.117 and its addendum

10) 본절의 논의는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 22권 제2호(2012. 8.). 84쪽 이하 참조.

B2C를 포함해 소액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지출비용이 적은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의의 필요성을 찾고 있다.¹¹⁾ 즉, 기존의 재판에 의한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소규모 거래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을 피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¹²⁾

더 나아가서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제되었다. 즉,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인 조약이 이 분야에는 없어 B2C 거래에 있어 중재판정의 집행이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B2B와 B2C 사이의 분쟁을 세계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적인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집행력의 부여를 함으로써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실체법의 불통일에 따른 법적규제의 혼란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지적된 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본 논의는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실체법적 규정들의 불통일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11) 이는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ODR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ODR플랫폼을 통하여 ODR절차가 진행되고 당사자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쟁과 관련된 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갖는다(이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 12., p. 96).

12) ODR의 일반적인 도입배경에 다양한 논거로 김선정, “온라인 상사분쟁해결방법의 법적 과제”, 『경영법률』 제17집 제1호, 2006, pp. 563-566 참조.

불통일과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 규정의 불통일이 본 논의 촉발의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내지 인터넷에 대한 각국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 이를 역기능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법률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업 내지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자제하고 자율적인 규제 장치에 의존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법적 환경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은 다른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실체법적 규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국제사법 규정의 불통일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유럽공동체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소위 “로마협약”을 채용한 나라는 소비자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특정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협약을 채용하지 않은 나라는 자국 사업자들이 해외 소비자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로마협약을 채용한 국가(예컨대 한국)에서 그 국가의 소비자법에 의하여 판결이 났더라도 로마협약을 채용하지 않은 국가(예컨대 미국)의 법원은 그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2B의 경우 당사자 자치가 완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대한 실체법적 기준인 준거법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으나,

B2C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이 달라서 실체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UNCITRAL에서 본 논의는 절차법적 측면과 집행법적 측면에서 그 논의가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법적 문제 및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소액의 전자상거래분쟁의 경우 법원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절차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재에 의하더라도 현재 상사중재와는 달리 소비자중재에는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집행법적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실체법적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의 규제수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실체법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준거법 결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소비자보호 수준을 준거법의 결정상 준수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UNCITRAL의 작업범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법적 규정을 넘어서 분쟁해결의 실체적 규정에 관한 부분과 중재결정의 집행에 관한 부분이 포괄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UNCITRAL 관련 논의에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2가지 시각

이러한 입법적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UNCITRAL에서의 본 논의가 각국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¹³⁾ 즉 소비자보호는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상의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

13) 소비자보호에 대한 실무작업반의 최신 논의는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fifth session (New York, 21-25 May 2012)의 V.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f the Working Group's deliberation on consumer protection; reporting to the Commission(A/CN.9/744) 참조.

한 작업에 있어서 국내법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소비자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시각은 강한 소비자보호 규정과 로마협약의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취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나라로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캐나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은 본 ODR 작업이 이러한 소비자보호 규정과 로마협약 규정을 통한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국내 소비자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소비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소비자법의 내용과 정책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가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국내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ODR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국내법을 통해 보호받은 수준과 동일한 보호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ODR을 통한 과정, 특히 중재과정에서 자국의 소비자법상 인정되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시각은 강한 소비자보호 규정과 로마협약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거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로 미국,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은 각 나라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국제전자상거래에서의 소액거래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 및 판결의 집행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므로 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기존의 법제도를 통하여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ODR을 통하여 각국의 소비자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 즉, ODR은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침해하거나 기존에 소비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실체적 정의를 강조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절차적 정의가 강조되는 영미법계 국가의 충돌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본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 3 절 ODR 절차의 기본구조와 중요쟁점¹⁴⁾

1. 국제전자상거래 ODR와 관련된 기본관념과 그 시각

(1) 기본적인 ODR 모델의 설정

1) 완성된 하나의 ODR 분쟁해결 모델

UNCITRAL에서 진행되고 있는 ODR에 관한 논의는 열린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델을 기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바라본다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많은 가상시나리오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는 실무작업반에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밴쿠버 회의에서 제기된 안¹⁵⁾이기도 하지만 실제 실무작업반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14) 본장의 논의는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 22권 제2호(2012. 8.), 91쪽 이하 참조.

15) 이 안의 소개로 오수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IV]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1, p. 27.

모델을 기초로 많은 발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수의 참가국 대표들이 이러한 모델을 머릿속에 두고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ODR 제공자(global administrator)가 기술적인 ODR 플랫폼과 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더 추가로 유념해야 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원활한 진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국가별 관리자(national administrator)를 별도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국가별 관리자가 추가로 개입하는 것은 현재 UNCITRAL 논의에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언어장벽의 극복 및 개별국가 내의 사업자의 ODR에 대한 참여와 집행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추구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더 자세히 이 문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언어장벽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 등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자동화된 번역시스템 또는 각 언어별로 별도로 제작된 ODR 절차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방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ODR 제공자 내지 소비자관련 단체 내지 기관이 분쟁해결에 관여하여 원만한 절차의 진행을 돕는다면 더 원활한 진행이 예상된다. 또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발적인 사업자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는 이상 사업자들의 참여유도 및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조정 내지 중재결정의 자발적이고 원만한 이행 등을 위해서는 각국의 관리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참여가 전제된다. 즉 분쟁당사자들이 본 ODR 절차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본 절차가 해당 분쟁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진행은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서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들은 자신들

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단계가 진행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자동화된 시스템 내지 중립적 제3자가 개입하여 촉진된 합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인 중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중재절차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인에 의한 판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이 결정되고 각 국가별 관리자들이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⁶⁾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물론 법원에 의한 집행을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액분쟁임을 감안하면 국가별 관리자가 사업자에게 판정결과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및 평가시스템 내지 신뢰마크(Trustmark)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2)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모델

앞에서 살펴본 ODR 모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앞의 모델을 고려하지만, 현재 UNCITRAL 논의에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있는 열린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ODR 모델은 전세계적, 지역적(예컨대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등), 국내적인 ODR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ODR 제공자(ODR provider)도 하나만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모델을 지향한다면 아래와 같은 다수의 질문들이 제기된다.

① 전 세계적인 ODR 모델의 경우 하나로 집중된 ODR 플랫폼이 구축되는가? 아니면 다수의 분화된 플랫폼으로 구축되는가? 그리고 한 ODR 제공자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이 제공자는 하나 또는 다

16)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ssues for consideration in the conception of a global ODR framework, para. 9-12 (A/CN.9/WG.III/WP.110).

수의 ODR 플랫폼을 관리하게 되는가?

② ODR 제공자가 다수라면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제공자가 관리하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가?

③ 다수의 ODR 제공자 또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경우 ODR이용자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열린 모델을 기초로 하면서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나아가면서 UNCITRAL에서는 ODR 모델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ODR 모델의 기본개념

앞에서 살펴본 열려 있는 ODR 모델을 기초로 하지만, UNCITRAL 논의에서 ODR, ODR 제공자 및 ODR 플랫폼 개념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장차 어떠한 ODR 모델이 나올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22차 회의(17)에서는 ODR과 관련하여 협의와 광의의 두 개념 예가 논의를 위하여 제시되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ODR은 제3자에 의하여 내려진 구속력 있거나 구속력 없는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수단으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제시되었다. 기본적으로 협의의 개념에는 제3자에 의한 결정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조정 내지 중재만을 고려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7)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econd session (Vienna, 13-17 December 2010) (A/CN.9/716) 참조.

광의의 개념으로서 ODR은 “통상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의미한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전부 또는 일부분만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스트리밍 미디어,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과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을 분쟁해결 과정의 일부로 통합해 사용하는 분쟁해결수단을 말한다”는 정의가 제시되었다. 광의의 온라인 분쟁해결은 협의의 분쟁해결과 비형식적 사적인 협상(informal private negotiation), (협상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화된(automated) 또는 보조적(assisted) 협상이 포함된 개념이다.

ODR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 다양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사무국에서 제시된 광의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해 사건 해결의 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제한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여기서의 정의 규정이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어떠한 정의이든 미래에 새롭게 출현하게 될 신기술들이 배제하지 않도록 충분히 열린 개념이어야 하며, 어떤 기술을 적용해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중립성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 그 밖에 온라인 분쟁해결의 정의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특히 많은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협상단계를 포괄하기 위하여 일단 광의의 분쟁해결 개념을 기초로 논의 하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뒤에 다시 개념의 개별적 요소를 다루기로 하였다.¹⁸⁾

18) 손현·이병준,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IV]-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2011, pp. 23-24.

제23차 회의¹⁹⁾에서는 사무국에서는 “ODR은 온라인 분쟁해결을 뜻하고 이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절차적인 측면은] [분쟁해결의 절차는] 전자통신 기술에 의해서 행해지고 촉진되는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 개념 정의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24차 회의²⁰⁾에서는 다시 비슷한 개념정의를 사무국에서 제안되었으나, 많은 논의를 거친 후 결국 제25차 회의²¹⁾를 통하여 현재 ODR개념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즉, ODR이라 함은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로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분쟁해결을 하는 시스템이며 전자적 통신과 다른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촉진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²²⁾

2) ODR 제공자(ODR provider)

제22차 회의에서는 ODR 제공자를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직접 선택한 분쟁해결 방법을 위해 절차를 관리하고 ODR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정의하는 안이 사무국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여기서의 개념정의는 ODR 제공자의 역할만이 정의되어 있을 뿐 누가 ODR 제공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ODR 제공자의 자격 문제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²³⁾ 해당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단일 또는 복수의 공적기관이나 단체로

19)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third session (New York, 23-27 May 2011) (A/CN.9/721) 참조.

20)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fourth session (Vienna, 14-18 November 2011) (A/CN.9/739) 참조.

21)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fifth session (New York, 21-25 May 2012) (A/CN.9/744) 참조.

22) “‘ODR’ means online dispute resolution which is a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 facilitated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ara. 56 (A/CN.9/744).

23)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형 분쟁해결기구를 많이 갖고 있음에 반하여 서양의 국가들은 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적 분쟁해결기구가 대부분이다.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추가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ODR제공자와 관련한 일반적 쟁점들을 A/CN.9/WG.III/WP.110에 정리하였다.

제23차, 제24차 회의에서는 ODR 제공자가 과연 독자적인 ODR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 특히 협상 단계에서는 ODR 플랫폼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만을 하게 되므로 ODR 제공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과 ODR 제공자는 이 경우에도 관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역할이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전자의 입장은 기술적 의미를 부각시킨 데 반하여 후자의 입장은 관리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충돌되었던 입장은 제25차 회의에 이르러 후자의 입장으로 정리되었고 결국 ODR 제공자를 “온라인 분쟁해결 제공자로서 ODR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본 규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ODR 절차를 관리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로 개념정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ODR 제공자는 자신의 ODR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고 타인이 구축한 ODR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ODR 절차를 관리하는 주체로 이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 ODR 플랫폼(ODR online platform)

제22차 회의 때 ODR 플랫폼(ODR online platform)을 “온라인 분쟁해결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forum(포럼, 법정, 재판소)”으로 정의되었다. 제22차 회의 때에는 이 개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제23차 회의에서 이 개념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우선 ODR 플랫폼의 기능이 ODR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 의사소통의 내용을 저장하는 우편수령함에 불과한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안전성과 분쟁해결 정

보의 적절한 저장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ODR 플랫폼은 분쟁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적 통신을 생성, 발신, 수신, 저장, 교환, 처리하는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의미한다”라는 정의가 제안되었다. 사무국에서는 A/CN.9/WG.III/WP.100에 ODR 플랫폼과 관련된 일반적인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이 개념은 그 후 크게 내용상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3) 중재단계와 관련된 쟁점²⁴⁾

1) 3단계 패키지모델에서 탄력적인 2개의 트랙병존모델로

제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부터 UNICTRAL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패키지 모델을 지향했었다. 즉, 협상(negotiation), 촉진된 합의(facilitated settlement) 및 중재(arbitration)라는 3단계를 ODR 제공자가 모두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절차는 신속, 저렴하면서도 완전한 분쟁해결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협상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촉진된 합의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인 중재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ODR 제공자 내지 당사자들이 어느 한 단계를 임의적으로만 선택하거나 절차에서 하나의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협상의 단계에서는 ODR 제공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ODR플랫폼에서 당사자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합의가 이루지는 단계이다. 촉진된 합의단계와 중재단계에서 비로서 중립적 제3자(neutral) 1명이 개입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가 두 단계에게 관여한다. 촉

24) 이하의 논의는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2013. 3.), 135쪽 이하 참조.

진된 합의단계에서는 중립적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 중재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중재단계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열린 제2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격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3단계 패키지 모델이 부분적으로 포기되었고, 중재절차를 원하지 않은 나라의 요구를 반영하여 2단계모델과 3단계모델을 구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는 (1) 협상/조정 단계로 구성된 절차와 (2) 협상/조정/중재 단계로 구성된 절차가 인정되어 2개의 트랙병존 모델(two pathway model)이 제안되었다. 이는 3단계의 패키지 모델보다는 2개 내지 더 다양한 분쟁해결절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기본적으로 현재 ODR 절차규칙은 계약법적 성격(contractual nature)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 절차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법 절차규칙이 협약 내지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규범으로서 분쟁당사자들인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2단계모델 또는 3단계모델 중에서 어느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주로 ODR 절차를 제공하는 ODR 제공자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ODR 제공자가 어느 모델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인지가 결정적일 것이다. 물론 ODR 제공자는 각 모델 중의 하나만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두 모델 모두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15 (A/CN.9/762)

2) 두 번째 트랙에서 최종단계로서의 중재

결국 현재 UNCITRAL 논의에서 중재는 두 번째 트랙에서 3번째인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트랙의 존재를 원하는 국가들(미국 등)은 완전한 중재를 제도적으로 만들 것을 원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는 타당한 시각으로 중재판정은 종국적이고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집행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국가들(유럽연합국가 등)은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중재를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중재에 관련된 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주의하면서 이 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4) O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질적 의미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 및 소비자법을 통일하는 방안, ② 각국의 소비자계약법과 관련된 국제사법규정을 통일하는 방안 및 ③ ODR을 위한 사건해결의 기준이 되는 일반원리를 마련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방안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두 번째 방안 역시 각국의 다양한 국제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통일된 모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ODR을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표준적인 규정 내지 일반원칙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간명하면서도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 될 것이다. 즉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ODR을 통한 해결하는 모델은 관할권, 준거법으로부터 당사자들을 자

26) Report of Working Group III (Online Dispute Resolution) on the work of its twenty-sixth session (Vienna, 5-9 November 2012) para. 14 (A/CN.9/762).

유롭게 하여 분쟁해결을 간명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방안이 소비자법과의 충돌가능성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해야 할 점이고 이 부분은 역시 UNCITRAL 위원회는 물론 실무작업반의 논의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2. 소비자법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

(1)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²⁷⁾

협상과 조정의 경우에는 소비자법의 적용여부와 소비자의 권리침해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분쟁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중재자의 판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재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법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 쟁점은 본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극복 내지 완화해야 하는 쟁점에 해당한다.

중재의 합의라 함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공평, 적정, 신속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포기 내지 배제하는 합의이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중재에 회부하고, 중재판정에 구속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7)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2012. 8.), 87쪽 이하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중재합의를 약관의 규정을 통하여 획득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14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는데, 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중재합의도 법원에 소제기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제소 합의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약관상 중재조항은 중재의 필요성을 기초로 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처럼 분쟁해결을 중재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중재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에 의하여 무효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중재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재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사용된 중재조항이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사용된 중재조항일 것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15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관상의 중재조항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비자중재에 대한 대립하는 2개의 시각

1) 소비자중재에 대한 입장의 차이

중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다. 그러나 대부분이 상사중재에 집중되어 있고 소비자중재에 대하여는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있더라도 아직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문제로 소비자중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UNCITRAL에서의 논의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B2B 및 B2C로 이루어지는 소액의 대량 피해사건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서 주된 대상이 소액의 대량 피해사건이므로 B2B보다는 B2C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B2C 사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재절차가 포함된 이상 소비자중재의 어려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중재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 또는 소비자중재에 대하여 보수적인 정책 내지 입법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소비자중재절차가 포함된 패키지 모델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있고, 그에 따라 아예 소비자중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양한 차원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된 규정내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중재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나라의 주된 논거는 소비자는 국경을 넘어선 소액 피해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외국법원에 가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법원판결의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매우 타당한 시각으로서 본 UNCITRAL에서 논의가 시작될 때에도 이 점은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다른 나라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중재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소비자중재를 통한 소비자중재판정의 집행 내지 집행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UNCITRAL에 의하여 설계되는 ODR 절차에서는 신속·저렴한 절차를 통하여 중재판정을 소비자가 법원을 통한 판결에서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엔중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유엔중재협약을 통하여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제소비자중재에 대한 의문점

소비자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중재 및 소비자중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담겨져 있다.

첫째, ODR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의 결정적인 논거는 바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액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법원을 통한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지 않은 구제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본 ODR논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중재를 통한 중재판정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당사자가 자의로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주소지인 외국법원에 가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에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지만, 집행단계에서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UNCITRAL논의 목적과 부합하는 해결책인지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뢰마크(Trust mark), 사업자 신뢰도 평가제도 등 간접적인 집행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중재판정을 받은 당자가가 외국법원을 통하여 실질제로 집행을 받는 것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비용, 실현가능성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액의 대량피해 사건을 대상으로 처리하려는 본 ODR 절차에서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 본 절차를 통하여 다수의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수의 중재판정을 집행하려고 할 때 비용과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통하여 보았을 때 중재절차는 결국에는 소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이겠지만, 소수인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구가 중재대상이 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집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 번째 강력한 반대논거는 바로 사업자가 중재판정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중재판정을 통한 집행은 하였을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NCITRAL 중재협약에 가입할 당시에 소비자계약의 경우 유보조항을 두어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국내법원에서 소비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의 우려를 낳고 있다.

네 번째 비판점은 미국에 존재하는 집단소송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집단소송이라고 함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받은 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전자상거래와 연관된 대량거래로 인한 피해유형의 경우 바로 이러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혼자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대가능하지 않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재합의를 하면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집단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도 막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UNCITRAL 논의에서 ODR 절차에서는 개별 당사자의 피해구제만 상정되어 있지, 집단적 피해구제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중재절차를 포함한 ODR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외국의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제 3 장 UNCITRAL ODR W/G의 제27차 회의 내용 분석

제 1 절 ODR W/G의 제27차 회의 아젠다 개관

UNCITRAL Working Group III는, 2010년 제22차 회의부터 실무작업반 III에 위임된 국제전자상거래에서의 B2B 및 B2C로 이루어지는 소액·대량의 피해사건 및 분쟁을 다루는 신속, 효율, 저비용의 온라인 분쟁해결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제27차 UNCITRAL W/G III 회의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유엔 뉴욕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본 제27차 회의에서는 제23차, 제24차, 제25차, 제26차 회의에 이어 신속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분쟁해결 모델에 관한 절차규칙을 논의하였다.

UNCITRAL 31개 회원국에서 파견된 각국대표 79명 및 참관국 10개국 대표 18명, 국제기관 관계자 37명 등 총 134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으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선임, 김윤종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박정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방옥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선임,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송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최용훈 참사관 주유엔대표부(이상 가나다순)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회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2번의 회의를 갖고, 첫째로 3단계로 된 단일절차에서 사후합의를 하는 안과, 둘째로 두 개의 트랙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후합의를 하는 안 등으로 준비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논의의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사전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만난 국가들은, B2B를 중심으로 한 절차를 먼저 만들고 그 후에 B2C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를 만들자고 하는 안을 제시했고, 유럽연합은 사전에 회의

를 갖고 의견을 모아, 두 개의 트랙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절차 시작단계에서 사전중재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나라와 가능한 나라들을 구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제27차 회의 초반, 조문을 검토하기 전에 ODR 절차규칙의 기본적인 틀 마련을 위하여 1안인 단일패키지모델과 2안인 두 개의 트랙 병존모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설명한다. 2안으로 기본적인 틀을 확정된 이후 실무작업반은 ODR 절차규칙 초안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초안 제7조(촉진된 합의), 초안 제8조 bis.(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 초안 제9조(중재)의 4개 조문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 2 절 ODR 절차의 논의방향 (B2B로 제한, 2트랙모델 유지)

1. 유럽연합의 사전문건 제출 및 입장

제27차 회의 초반, 유럽연합은 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²⁸⁾ 당해 문서에서는 잠재적 중재 모델(위의 3단계 모델)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논쟁을 야기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ODR 규칙에 중재 모델을 포함하여 고안하는 것은 세계적인 ODR 절차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공적인 ODR 절차들은 중재 모델을 기반으로 고안되지 않았다. 중재절차보다도, 이들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은 판정을 내리고 사적 강제집행 방안을 통하여 판정의 사실상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나아가 중재절차는 절차적으로 무겁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강제집행방안 관점에 있어서 온라인 중재의 의미는 매우 의문스럽다. 해당 절차를 거쳐 내려진 중재판정이 1958년

28) Proposal by the European Union observer delegation, A/CN.9/WG.III/WP.121

외국중재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강제집행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액, 다량 거래의 맥락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1958년 뉴욕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어서 강제집행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는 신청인이 소비자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재판정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중재판정을 자동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정 채권자(신청인)가 채무자(피신청인)가 자산을 보유한 지역의 강제집행법원에 가서 판정이 강제집행가능하다는 선고를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판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법적 체계 내로 돌아야만 한다. 이는 피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그의 자산이 있는 지역의 법적 체계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나아가, 법원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소구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있다. 비용은 특히 판정 채무자(피신청인)가 타국에 있는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 이는 특히 ODR 규칙 즉 국경을 넘어선 소액, 다량 거래 맥락에 있어서 명백해지고, 중재판정의 강제집행비용은 총 판정금액보다 높아질 확률이 많다. 따라서 특히 소비자이거나 중소기업자인 판정 채권자(신청인)가 당해 판정의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를 고려하면, 소비자의 사전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적 기준이 각국 별로 다르다.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기준이 있다: 어떤 국가들(“Group I 국가들”)에서는 사전중재합의가 당사자 일방이 소비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 모두를 구속한다. 다른 국가들(“Group II 국가들”)에서는 사전중재합의가 소비자를 구속하거나 내지는 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 중재합의는, 분쟁 사후에 체결된 경우에만 소비자를 포함하여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유럽연합은 UNCITRAL 사무국이 실무작업반의 제27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발간한 실무문서(Working Papers; WPs)는, 실무작업반이 이전 제26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실무문서 119 및 119/Add.1이 소위 “두 가지 트랙병존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2) 그러나 절차규칙에서 소위 “중재 트랙”(실무문서에서는 “Track I”이라고 적시함)에서, “Group II 국가들”에서도 소비자 사전중재합의가 적용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준을 확립하는 데 실패하였다. 대신에 실무문서 119 및 119/Add.1은 “Group I 국가들”에서만 단독적으로 작동하는 기반에서 작성되었다.

실무작업반은 ODR 규칙이 중재 단계를 포함한다면, 사전중재합의에 관하여 Group II 국가들의 기준 또한 존중하는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Group II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들로부터 “절차규칙의 중재트랙에 직면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온라인 구매자가 Group II 국가의 소비자인 경우 절차규칙에서 중재트랙이 첫 단계에서 합의될 수 없거나, 또는 만일 소비자가 절차규칙의 중재트랙에 동의한 경우 (예컨대 온라인 판매자가 오직 절차규칙의 Track I만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분쟁 사후 중재 단계 개시 동의 없이 (예컨대 “두 번째 클릭”) ODR 제공자가 절차의 중재단계를 시작할 수 없다.

어째서 ODR 규칙이 계약법적 성질만 가지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지, 실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간단히 말해서 절차규칙은 계약법적 성질만 가지도록 의도되었고(즉 모델법 협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Group II 국가들의 소비자보호 법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비록 조문으로서 사실적으로 올바를지라도,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가 바로 그 증거이다.

만일 Group II 국가의 한 소비자가, 실무문서 119 및 119/Add.1에 현재 적시된 대로 Group I 국가에 설립된 온라인 사업자와 “중재 트랙 합의”에 참여하고 당사자들이 관련 분쟁을 Group I 국가에 설립된 ODR 제공자에게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Group II의 소비자보호 관련법제는 관련 ODR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ODR 절차규칙은 Group I의 관련 소비자보호 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관련 Group I 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자국 소비자보호 법제에 앞서 ODR 절차의 판단을 받지 못하므로 결국 소비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위의 예시에서, ODR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중재판정을 내려 그에게 금액지불, 예컨대 200불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다.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를 향해 현재 소비자가 거주중인 Group II 국가에서 당해 판정을 강제집행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실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는 자신의 강제집행 법원 내지 당국으로부터 중재판정이 선고되었고, 따라서 200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기간 내에 강제집행 법원/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서면을 받을 것이다.

압도적 대다수의 (국제 중재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아닌) 소비자들은 상당히 겁을 먹고 단순하게 지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관련 Group II 국가 법제에서 중재합의는 구속력이 없다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당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200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고도로 특화된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소비자들이 현재 상태대로 절차규칙의 “중재 트랙”에 합의한 경우 관련 소비자보호 법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관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ITRAL은 실무작업반 III에게 소비자 보호 법제를 대체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적 의미에서 그 위임사항을 시작함에 있어 실무작업반이 소비자보호를 고려하는 효과를 특히 유념하라고 결정하였다. 간단히 말해 절차규칙이 계약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보호 법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절차규칙 초안의 실무적 효과를 고려하라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존중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시 (외국 중재판정을 받은 소비자가 두려워하며 당해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구매를 자제하도록 만들 것이다.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구매에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는커녕, ODR 규칙이 소비자들을 잠재적 전자상거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는 UNCITRAL 위원회가 초기에 언급한 UNCITRAL ODR의 합리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만일 절차규칙이 현재 실무문서 119 및 119/Add.1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형태로 고안된다면, 실무작업반 III은 그 위임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구매자들이 올바른 트랙을 선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와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기준으로서 ODR을 고안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명백할 수 있다. 수많은 ODR 시스템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ODR 절차가 중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무작업반이 절차규칙에서 중재트랙을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온라인 구매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트랙을 선택”하게 하는데 도전을 받는다. “온라인 구매자들을 올바른 트랙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분쟁 사후에 중재트랙에 동의하지 않는 한 ODR 절차가 중재에

서 끝나지 않는 Group II 국가의 소비자로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절차규칙이 보장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1. 온라인 구매자들이 “올바른 트랙을 선택”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ODR 제공자에게 놓이는 것이다. ODR 규칙은 Group I 국가들 및 Group II 국가들의 목록을 나열한 두 가지 부록을 통해 “소비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면 - 곧 발전될 - ODR 제공자를 위한 원칙들은 ODR 제공자가 당해 분쟁이 Group II 국가의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ODR 절차가 당해 소비자의 사후 동의 없이 중재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일부 대표단들은 - 거래 당시에 - ODR 절차가 중재 단계에서 종료되도록 동의되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대표단들은 위에서 언급한 진행 해결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 구매자들을 올바른 트랙에 두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따라서 거래 당시에 놓일 필요가 있는데, 즉 당사자가 ODR 조항에 동의한 때이다. ODR 조항이 온라인 상인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구매자가 “동의합니다” 박스를 클릭함으로써 동의하는 이상, 당해 방법은 바로 이 지점, 즉 온라인 상인의 웹사이트에 놓여야 한다.

위 (2)에서 기술된 방법은 온라인 사업자의 웹사이트로 하여금 구매자가 Group I 국가에서 구매하는지 내지는 Group II 국가에서 구매하는지 그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구매자가 Group II 국가에서 온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웹사이트가 구매자를 Group II 국가의 소비자로 구별하였다면, 자동으로 절차규칙의 “비중재트랙”(Track II)을 제공하며,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사업자가 거래를 위해 타방 구매자들에게 관련 트랙(Track II 내지 Track I)을 제공할 것이다.

ODR 규칙에서 절차규칙은 다음의 두 부록을 포함한다.

- * Group I 국가들을 나열하는 Annex I;
- * Group II 국가들을 나열하는 Annex II.

각 국가들은 ODR 규칙을 채택하기 전에 앞서 UNCITRAL 사무국에 자신들이 Annex I 또는 Annex II에 포함되기 바란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 * 절차규칙 제2조에서, “소비자”의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수많은 다국적 기구들이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예컨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조); 이러한 정의는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 * 절차규칙은 구매자가 Group I 국가의 소비자인 경우에 오직 Track I만이 사후에 합의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기술된 방법은 곧 온라인 사업자의 웹사이트가 구매자에게 제공된 ODR 규칙의 Track I 내지 Track II를 잠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IT적 측면에서 매우 쉽고,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모든 온라인 사업자들은 구매자가 자신의 주소(선적지/구매지)를 포함하는 주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들의 시스템은 따라서 당해 구매자가 Group I 국가 내지는 Group II 국가에서 왔는지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미리 가진다.

구매자가 소비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식에 의해 가능하다: 당해 시스템이 성립하여 (주문서에 구매자가 주소를 적는) Group II 국가의 구매자가 있는 경우, 당해 시스템이 구매자에게 질문을 묻는다 - ODR 규칙 제2조의

“소비자” 정의에 일치하는지 - 그리하여 당해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예컨대 “귀하는 이 구매를 귀하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업적/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까?”)

전술한 정보의 수집결과를 통해 ODR 규칙의 Track I 또는 Track II 를 선택하는 것은 IT 작동적 측면에서 매우 쉽다.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UNCITRAL ODR 규칙을 제공하려는 온라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직통방식을 포함하여, 사실상 이는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중재단계에 대한 논의

중재와 관련하여 ODR 절차에서 중재를 포함한 3단계 단일패키지모델이 처음에 제시되었으나, 지난 회기인 제26차 회의 때 국가별 소비자보호 정책·법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견해차로 논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두 개의 트랙병존 모델이 제시되어 논점이 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두 개의 트랙병존모델은 협상-촉진된 합의-중재로 이루어진 3단계 트랙(Track I)과, 협상-촉진된 합의(-비구속적 권고)로 이루어진 2단계 트랙(Track II)로 이루어져 있다.

ODR 절차규칙을 검토하기 전에, ODR 절차규칙의 규율대상과 그 형식 등에 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첫째로 절차규칙의 대상이 B2B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B2B 뿐 아니라 B2C까지 포괄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과 문제되어 단일패키지모델 대신 두 개의 트랙병존모델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제1안 : 미국, 일본, 콜롬비아,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은 ODR 절차규칙을 B2B에 한정하고 이후에 B2C로 확장하자는 입장을 주장하였

다. ODR 절차규칙의 효력은 거래 시점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 절차규칙을 따르는 것에 동의했을 때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입장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ODR 절차규칙은 대량의 소규모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B2B 사안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등과 같은 문제는 B2B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B2C에서 문제되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논의의 빠른 진척을 위해서는 ODR 절차규칙에 관한 논의를 우선 B2B에만 한정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무국은 위임받은 사항이 B2B와 B2C를 모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ODR 규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ODR 절차규칙의 규율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다수의 사례가 되는 B2C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안 :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불가리아, 아일랜드, 말타, 캐나다는 두 개의 트랙병존 모델을 채택한 후에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사전에 제시한 비공식문건을 바탕으로, 중재단계가 포함된 Track I에서는 사전중재합의를 금지하는 입법례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해서는 헤이그 조약에서 차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절차규칙 초안 제2조에 소비자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간다. 이후 ODR 절차규칙의 부록(Annex) X에서 사전중재합의를 무효로 보는 나라에 Track I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록에 추가되도록 원하는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국가가 부록에 추가되도록 한다. UNCITRAL에 해당 국가가 사전중재합의를 인정하는지 그 여부를 등록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 각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가능하다. 만일 구매자가 클릭을 잘못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라고 체크 또는 클릭한 후

에 분쟁이 발생하면, 유효한 중재절차를 기초로 중재판정이 있으며 이 때 소비자가 법원에 해당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다투게 된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일정한 사항들을 질문하여 구매자를 올바른 트랙으로 인도해야 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각 입법례를 반영하여 Track I과 Track II 중 올바른 트랙으로 인도한다. 예컨대 구매자의 구매 목적이 개인적인지 혹은 상업적인지를 묻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로 보고, 사전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에서 온 소비자가 아니라면 중재를 포함한 Track I로 인도하고, 사전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에서 온 소비자라면 중재를 포함하지 않은 Track II로 인도하게 된다. 이 근거로 온라인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쉽게 실현가능하며, 사업자가 사전중재합의를 인정하는 입법례와 부정하는 입법례를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분해야 하는 부담과, 소비자가 사전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법원에 가야 하는 부담 중에 무엇이 더 큰가를 고민할 때,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입법례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국가 등 다수가 찬성하였는데, 비록 위 제안이 불안정하고 불명확하더라도 두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안이라는 입장이었다. 찬성측은 위 제안에 덧붙여 사전중재합의를 금지하는 입법을 가진 국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각국이 목록에 자국을 추가하는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ODR 절차규칙은 계약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소비자 개념은 당사자를 소비자로 취급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무에서도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소비목적으로 구매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당사자의 주소를 묻는 판매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이 소비자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사전중재합의 금지국가의 목록에 추가될지 여부는 각국이

정하고 자주 바뀔 필요가 없다. 판매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만드는 부담이 사전중재합의를 통하여 무효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소비자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부담보다는 적다.

미국, 중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스라엘은 위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당해 안은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안이고, 실무문건 119의 문단 9-11의 비관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모든 나라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 대륙법에서는 입법으로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인정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나, 영미법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입법의 변화 없이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누가 입법례 목록을 만들 것인지와, 목록이 잘못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어느 입법례에 해당하는지는 각국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부록으로 정한다고 설명되었다) 나아가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의 공공정책 및 법규에 위반하게 되며 동시에 자유로운 중재합의를 인정하는 UNCITRAL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본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서는 소비자에 해당하나, 본 규정상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법원에서 부정해야 하는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Track I만을 선택하기 바라는 온라인 사업자는, 사전중재합의를 무효로 보는 국가의 소비자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

태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기까지 본안에 대한 찬성을 유보하였으며, 대한민국은 비록 불완전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잠재적 문제가 있지만, 본안이 두 개의 트랙병존 모델을 구체화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였다. B2B로 논의의 범위

를 한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B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전중재합의의 입법례가 복잡한 나라들의 목록을 만들기 어렵다는 난점과, 소비자 개념정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중국은 자국내 특별한 규율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논의 끝에 의장(오수근 교수)은 사무국에 B2C를 포함한 두 개의 트랙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반대측 견해가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안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안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과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본안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제 3 절 ODR 절차규칙(안) 분석

1. 초안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1. ODR 제공자는 [ODR 제공자가 보유하는 [또는 별도의 중재기관에 소속된]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에서 선택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해야 하고, 각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명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절차규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해결의 수행과 완료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중립적인 제3자는 자신의 독립성을 선언하고, [ODR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ODR 제공자에게 자신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이 생길만한 상황을 밝혀야 한다. ODR 제공자는 각 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중립적인 제3자가 합의의 촉진에 관련되어 그가 제8조 bis 내지 제9조 하의 ODR 절차 과정에서 장차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을 일으킨 경우, 해당 중립적인 제3자는 반드시 [사임하고 그에 따라 각 당사자 및 ODR 제공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동 ODR 제공자에게 밝힌다]. ODR 제공자는 각 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은 중립적인 제3자의 [(i)지명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역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 또는 (ii)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주의가 중립적 제3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서 선언하거나 밝힌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사실이나 상황에서 그러한 의심이 일어난 한] ODR 절차 중 언제라도] 지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bis. 일방의 당사자가 [위 제5항 (i)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중립적 제3자는 자동으로 결격이 되고, 그의 직책에는 ODR 제공자에 의해 다른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각각의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임명의 통지에 대한 최대 [3]번의 이의제기 기회를 가지게 되고, [위 제5항 (ii)의 대상이 되는] ODR 제공자에 의한 중립적 제3자의 다음 지명이 마지막으로 될 것이다. [대신 2일 이내에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명이 최종지명이 되어 위 제5조 (ii)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제5조 (ii)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ODR 제공자]는 [3]역일 이내에 당해 중립적인 제3자가 교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일방의 당사자는 협상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ODR 제공자가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역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일의 기간이 만료되고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ODR 제공자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ODR 플랫폼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중립적인 제3자가 절차 도중에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ODR 제공자는 ODR 플랫폼을 통해서 [제1항에 따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중립적 제3자를 지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에 대해 각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절차는 교체된 중립적인 제3자가 자신의 기능 수행을 중지한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8.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립적 제3자의 수는 한 명이다.”

(1) 회기 전 논의사항 및 사무국 지침

대괄호 안의 “또는 별도의 중재기관에 소속된”이라는 문구는, 중재기관 등에 소속된 중립적인 제3자를 포함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삽입되었다.²⁹⁾ 실무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ODR 제공자가 (가이드라인 문서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명단 및 해당 명단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지, ② 만일 그렇다면, “별도의 중재기관에 소속된” 중립적인 제3자를 선정할 권한이 중립적인 제3자의 명단을 유지하는 목적을 축소시키지는 않는지, ③ 만일 ODR 제공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ODR 제공자가 보유하는 [또는 별도의 중재기관에 소속된]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에서 선택하여]”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그리고 각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명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이전에는 (약간 변형되어) 본조 곳곳에 있었으나, 현재는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할 시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제1항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9) A/CN.9/744, para. 103

실무작업반이 본항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초안 제6조 제2항은 초안 제7조 제1항에서부터 옮겨왔다.³⁰⁾ 실무작업반은 중립적인 제3자의 독립의무 및 중립의무에 대해 진행 중인 초안에서 기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³¹⁾

Track I 및 Track II 양자 모두에서 적용되도록, 제4항은 초안 제8조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해 다루는 초안 제6조로 옮겨졌다. 제4항은, 중립적인 제3자의 중립성과, 적용가능하다면 새로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절차에 관한 초안 제6조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작업반은 제5조 (ii)가 당사자 일방의 재량으로 적용되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 자신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의심을 일으킬 때 그가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지, 또는 그러한 정보를 ODR 제공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후자의 옵션을 규정하기 위한 문언이 삽입되었고,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사임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ODR 제공자에게 그러한 의심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제5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5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당사자가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초안 제6조를 분리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다.³²⁾ 그 결과 기존의 제3항은 당사자가 중립적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언제든지 제기하는 권리와 그러한 이의의 결과로 구별하기 위해 제5항과 제5항 bis.로 나누어졌다.

당사자 일방이 중립적인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제5조 (i)에 따라, 지명의 통지 직후에 즉시

30) A/CN.9/744, para. 104

31) A/CN.9/744, para. 92

32) A/CN.9/744, para. 94

지명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이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자동으로 교체된다.

둘째, 제5조 (ii)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절차 중 언제라도 중립적인 제3자의 독립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의심을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된 지 2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실무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2일의 기간이 충분한가, ②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이의를 정당화하는 사실이나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³³⁾ ③ 만일 그렇다면, 중립적인 제3자를 교체하는 결정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지, ④ 만일 결정이 필요하다면, (제7조 제4항의 competence-competence 조항을 고려하여) 기존의 중립적인 제3자가 그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위 ④와 관련하여, 만일 중립적인 제3자가 당해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그러한 평가에 대한 책임을 ODR 제공자가 져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질문이 발생한다. 제5항 bis.의 마지막 문장에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문언이 삽입되었다. 대신, 이 쟁점은 ODR 제공자의 내부 검토 방법(제9조 ter. 참조) 또는 ODR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6항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진행 중 의무를 지는) 중립적인 제3자의 “최종 지명”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기 위해 제5조 bis.가 약간 수정되었다.

제6항은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를 향한 정보제공에 대해, 3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그러나 당해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모든 정보가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전달될

33) A/CN.9/744, para. 94 참조, 이는 초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중립적인 제3자의 진행 중 자기보고의무와 마찬가지로이다.

것이다.³⁴⁾ 새로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또한 제1항에서 언급된 바 있는 중립적인 제3자 명단에서 지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첫 대괄호 문언이 포함되었고, 당사자들은 그에 따라 고지받을 것이다.

제25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허가하면서 동시에 명료성을 제공하자는 기반 위에서, 제8항을 초안 그대로 유지하는데 동의하였다.³⁵⁾ 실무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소액분쟁에서, 1인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를 두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요한지, ② 현재 규칙 초안이 1인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를 둘 수 있는지.

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떻게 당사자들이 1인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를 두기로 합의할 수 있는가? 중립적인 제3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만일 당사자들이 복수의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규칙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한 경우(즉,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요청), 1인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가 지명되었을 때 모든 중립적인 제3자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실무작업반은 보다 논리적인 순서를 만들기 위해, 제8항을 제1항 바로 뒤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회기 중 논의사항

실무작업반은 초안 제6조에 대하여 촉진된 합의단계와 중재단계가 동일한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34) A/CN.9/744, para. 97

35) A/CN.9/744, paras. 101-102

제1안 : 태국, 가봉, 스페인, 프랑스, 이집트,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조정인과 중재인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별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예외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동일한 중립적인 제3자가 계속 진행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서 많은 나라의 경우 동일한 사람이 조정과 중재를 같이 하는 것을 제도적 문제라고 인식하며, 이를 무효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2안 : 체코, 대한민국, 크로아티아, 일본, 콜롬비아, 중국, 미국, 독일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맡고, 당사자의 거부권 행사가 있는 경우 교체되는 안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ODR 절차가 동일한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해야 하고 매우 신속한 절차진행을 목적으로 하며,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야 한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제3안 : 콜롬비아, 미국, 이스라엘, 필리핀은 현재 3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협상과 중재의 2단계로 하고, 촉진된 합의 단계는 중재 과정의 일부로 구성하여 중재자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3단계 안 자체가 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의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논거가 있지 않는 한,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또한 1단계인 협상과 2단계인 촉진된 합의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해결될 것이므로, 2단계인 촉진된 합의는 별도의 절차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 일본, 독일, 태국, 캐나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결국 의장은 절차상 2단계(촉진된 합의)와 3단계(중재)에서 동일한 중립적인 제3자를 유지하되,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교체토록 하는 제2안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다고 정리하였다.

제1항

이스라엘, 미국, 체코, 대한민국, 일본은 ODR 제공자가 제공하는 목록에서만 중립적인 제3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다른 기관에서 유지하는 목록에서 선택하는 경우 비용 또는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체코는 중립자가 선임된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해당 신상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장은 “[다른 중재기관에 속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당사자에게 함께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적합한 문구를 작성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제2항

싱가포르와 독일은, 중립적인 제3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의무조항(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절차규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해결의 수행과 완료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을 통하여 중립적인 제3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 절차는 ODR 제공자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여기에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ODR 제공자에게 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무국은 UNCITRAL 중재규칙 제11조에서 중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재인도 동의를 통하여 본 절차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다른 규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규정상으로도 중재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터키, 일본, 미국, 독일, 온두라스, 이스라엘은 중립적인 제3자의 충실의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장은 전반적인 동의에 따라 대괄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3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일본, 이스라엘, 콜롬비아, 네덜란드, 프랑스는 대괄호를 삭제하고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든 절차과정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사전에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사무국에서는 해당 문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본 규정상으로는 중립적인 제3자가 ODR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이를 ODR 제공자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나, 중립적인 제3자가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국은 중립적인 제3자가 ODR에게 통지하고, ODR 제공자는 다시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장은 대괄호를 삭제하고 해당 문구를 유지하되, ODR 제공자 ↔ 중립적인 제3자 ↔ 양 당사자 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무국에 문언작성을 요청하였다.

제4항

일본, 프랑스, 체코, 스페인, 중국, 태국은 중립적인 제3자의 사임 내지 시간지연 등에 대비하여 ODR 제공자가 중립적인 제3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국은 해당 문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의장은 중립적인 제3자 스스로가 교체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를 포함한 문언 작성을 요청하였다.

제5항

중재인 선임 당시(time of appointment)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유를 제시해야하는지 그 여부에 관해 입장이 제시되었다. 태국과 이스라엘은 당해 거부의 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신속한 절차를 위하여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사무국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3회의 한도 내에서만 중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5항 bis.

제5항 및 제5항 bis. 간의 구조에 대하여, 각국에서 규정 내용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무국은 이에 두 가지 단계의 교체방법이 이미 현재의 안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절차 시작단계에서는 이유의 제시 없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절차를 시작한 후에는 이유를 제시한 후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싱가포르는 당해 규정들이 너무 길고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있으므로 규정 내용을 2개 내지 3개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은 시작단계에서 이유제시 없이 교체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지만, 절차 시작 이후 이유 있는 교체 요청에 대해 3회의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의장은 선임 단계에서 이유 제시 없는 교체 요청에 대해 3회 한도로 자동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유를 제시한 후 ODR 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그 결과 사무국에서 해당 문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제7항

독일, 크로아티아, 태국, 미국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였다. 스페인과 중국의 경우는 중립적인 제3자를 교체한

경우,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안과 중단된 시점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방안이 존재하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사무국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다양한 권한이 있으므로 조문의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구두에 의한 심문이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본 절차에서는 제출된 문서에 의하여만 심리하므로 현제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8항

사무국은 다른 합의를 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체코,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 크로아티아, 콜롬비아, 일본은 중립적인 제3자를 한 명만 임명토록 하는 제안을 하였다. 반면 독일과 중국은 언어의 문제가 있으므로 두 명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자고 하였다.

이에 의장은 중립적인 제3자를 한 명만으로 두기로 결정하였다.

2. 초안 제8조(촉진된 합의)

”1.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이 합의(“촉진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시도하도록 의사소통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합의 계약에 이르면, 그러한 합의 계약이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 시점에서,] ODR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Track I

“2. 만일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이후로 (10)일 내에] 자신들의 분쟁을 촉진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촉진된 합의 단계

의 만료”), ODR 절차는 제9조에 따라 자동으로 중재로 넘어가게 된다.]“

Track II

선택조항 1:

“2. 만일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이후로 (10)역일 내에] 자신들의 분쟁을 촉진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촉진된 합의 단계의 만료”), ODR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선택조항 2:

“2. 만일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이후로 (10)역일 내에] 자신들의 분쟁을 촉진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촉진된 합의 단계의 만료”), ODR 절차는 제9조 bis.에 따라 자동으로 최종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 회기 전 논의사항 및 사무국 지침

촉진된 합의 단계에서 합의 계약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절차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에 관해 다루던 이전 문언은, Track I에서는 중재 절차의 시작으로 대체되었고, Track II에서는 실무작업반의 두 가지 고려사항인 두 가지 옵션으로 대체되었다.

촉진된 합의 단계에 대해서는 2단계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의되고 있다. 촉진된 합의 단계의 종료 역시, 다음 절차 단계로 넘어갈 때 시간을 기반으로 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이후로 10역일이 지나면 만료되도록 정의되었다.

제1항

당해 조항에서 서로 바뀌 쓸 수 있을 것 같은 “합의(settlement)” 또는 “동의(agreement)”라는 단어 대신, “합의 계약(settlement agreement)”라는 단어가 삽입되었다. 제1항에서 대괄호 안의 문언은 초안 제5조 제5항의 합의 문언을 반영하여 삽입되었다. 실무작업반은, 합의에 이른 경우 초안 제5조 제5항의 합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옵션이 더 간단하게 주목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2항

적절한 다음 절차 단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2항은 Track I (중재 트랙)과 Track II (비중재 트랙)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문구를 필요로 하였다. 자동으로 중재 단계에 넘어가게 하던 기존의 문언은 이에 따라 절차규칙 Track II 부분에서는 삭제되었다.³⁶⁾

Track II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옵션이 실무작업반의 고려사항에 따라 포함되었다. 첫 번째 선택지로,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될 때 까지 아무런 합의 계약도 달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는 종료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구속력 없는 결정을 허용하고, 그 강제집행은 신뢰마크(trustmarks)처럼 사적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작업반은 제26차 회의에서 “세 번째 방식(third track)”, 즉 중립적인 제3자가 사적 강제집행 방법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구속력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⁷⁾

절차규칙의 “Track III”가 이론적으로는 위 43번 및 44번 문단에 적시된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작성될 수는 있지만, 실무작업반은 일반절차규칙에 세 가지의 선택적 세트를 만드는 것이 일반

36) A/CN.9/762, para. 22

37) A/CN.9/762, paras.19-20

절차규칙을 이해하기에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그렇게 하여 일반절차규칙의 사용자친화성을 축소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선택조항 1이 Track II로 채택되어야 한다면, 초안 제8조 bis.는 (일반절차규칙 어디에서나 의문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절차규칙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회기 중 논의내용

제1항

먼저 독일은 촉진된 합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면 절차가 종료되고, 그 후에 기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미국은 합의가 통신으로 ODR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합의내용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후에 절차의 종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내용이 정리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1단계와 2단계의 합의에서 합의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에게 이를 알려서 중재판정에 당해 합의의 내용을 담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중재판정을 통한 집행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고, 중재를 포함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중재판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효력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대하였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계약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므로 합의가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면 합의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절차 내에서는 기록되지만 계속하여 계약상의 합의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2항

Track I의 현재안은, 3단계(협상-촉진된 합의-중재)로 구성되고, 각 단계가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미국은 현재안에서 2단계(계약적 합의의 효력)과 3단계(중재판정)가 가지는 효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자동적으로”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당사자 또는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 없이도”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둘째, “ODR 제공자는 즉시 당사자에게 계약적 절차에서 중재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자고 하였다.

반면 중국과 콜롬비아는 당사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위하여 “자동적으로”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도로 독일은 당해 표현자체를 삭제하고 문언을 양 트랙에 모두 비슷하게 만들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사무국은 “자동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제3항을 통해 각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의장은 현재의 논의를 반영하여 문언을 재조정 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하였다.

Track II에 대해서는, 본 규정상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2개의 안을 두고 논의하였다. 제1안은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제2안은 중립적인 제3자의 구속력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캐나다, 네덜란드, 대한민국, 체코, 태국 모두 제2안을 찬성하여 이를 기초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장은 제2안으로 결정 후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3. 초안 제8조 bis.(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

”1.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에게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일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기일은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부터 (10)역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쟁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ODR 제공자는 해당 결정을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며 해당 결정은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 내지 방어를 위한 증명책임을 진다. 중립적인 제3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건에 필요할 때 그러한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4. 결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결정에 따르는 것은 권장되고, ODR 제공자는 결정의 동의를 밝히는 방안으로 신뢰마크 이용 내지 기타 수단을 소개할 수 있다.”

(1) 회기 전 논의사항 및 사무국 지침

실무작업반이 초안 제8조 제2항에서 선택조항 2 (Track II)를 유지하기로 결정해야 하면, 초안 제8조 bis.만이 적용될 것이다. 초안 제8조 bis.의 제1항 및 제2항은 초안 제9조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규정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결과단계에서 구속력 있고 강제집행가능한 중재판정은 없지만, 실무상으로 결정생성 과정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초안 제8조 bis. 및 초안 제9조에 관하여, 실무작업반은 동일 인물이 중재자이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절차와 관련된 어떤 쟁점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제3항

본항은 결정생성 단계 절차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초안 제9조 제3항에 상응하여 초안 제8조 bis. 제3항으로 재배치되었다.

두 번째 문장은 실무작업반이 일반절차규칙 내에 예외적인 상황, 즉 당사자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지는 증거를 바로 얻을 수 없거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³⁸⁾

실무작업반은, 중립적인 제3자가 현재 규칙 초안 제7조 제3항에 포함되어있는 바와 같이 정보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 또는 요청할 권한 역시 가져야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주장 내지 방어를 위하여 사실증명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2) 회기 중 논의사항

당해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Track II에서는 3단계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내리는 결정(decision)이라는 표현보다는 권고(recommendation)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논의하였다. 현재 단계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내리는 것의 의미에 관한 논의 및 그 방식을 검토하였다.

제1안은 중립적인 제3자의 권고가 있고, 그 권고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당해 절차는 종료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계약적 합의의 효력을 갖는 방식이다. 제2안은 사전에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가 있고, 이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이 있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중립적인 제3자가 내리는 결론이 권고의 성질만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콜롬비아는 양쪽 모두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공통적으로 법원을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캐나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적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입장이었고,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법상 다양한 조정의 형태(소비자보호원에서의 조정, 법원에서의 조정

38) A/CN.9/762, paras. 66-67

등)가 있고 그 효력도 다양하므로 어떤 형태를 취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기타 논의사항으로 독일과 스페인은 제2항과 제3항의 위치를 바꾸는 제안을 하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recommendation과 decision 중 recommendation 사용을 주장하였다. 독일, 크로아티아, 프랑스는 중재의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나열되어 있으나, 현재안은 기초로 하는 사실관계만 언급하고 있고, 계약상의 조항을 기초로 하여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태국은 입증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본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 중국, 네덜란드는 입증책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의장은 초안 제8조 bis.에서 구속력 없는 결정이라는 성격을 표현하기 위하여 “decision(결정)” 보다는 “recommendation(권고)”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res judicata(기판력)”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판정으로 인하여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님”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이집트의 입장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고의 성질은 지나,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결정을 하도록 하고, 표현은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였다. 입증책임과 관련된 제3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의 위치를 서로 바꿨다.

4. 초안 제9조(중재)

“1.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에게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일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기일은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부

터 (10)역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쟁을 검토하고 판정을 내려야 한다. ODR 제공자는 해당 판정을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며 해당 판정은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 내지 방어를 위한 증명책임을 진다. 중립적인 제3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건에 필요할 때 그러한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4. 중립적인 제3자는 해당 판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판정이 내려진 시일과 장소를 적시하여야 한다.

“[4 bis. 제3항의 요건을 위하여:

(a) 서면으로 작성된 판정은 접근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이후의 참조를 위해 사용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b) 서명된 판정은 중립적인 제3자를 밝히기 위한 것이자 판정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그의 승인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로 사용되어야 한다.]

“5. 해당 판정에는 반드시 그 판정이 내려진 근거를 간략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가 제공한 최종 제출의 전달일 후, (7)역일 이내 ((7)역일 이후로 가능한 추가연장을 포함하여)에 무조건 그리고 즉시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시한 내에 판정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은 당해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근거를 이루지 않는다.

“[6. bis. 판정은 법원 또는 기타 관할기관 이전에 법적 절차 내지 법적 권리를 추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적 의무로 인해 외부에 공개해야 할 경우 또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공개된다.

“7. 해당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판정의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8. 모든 사건에서, 중립적인 제3자는 형평과 선에 기초하여, 계약 조항 내용에 따라,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당해 거래에 적용가능한 상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1) 회기 전 논의사항 및 사무국 지침

실무작업반은 제26차 회의에서 “판정”이라는 문구가 초안 제9조 전체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³⁹⁾ 또한 해당 회의에서 “판정”이라는 용어는 ODR 절차의 중재단계에만 적용될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⁴⁰⁾

절차규칙의 Track I은 중재단계에서 종료되고, 그 결과로서 정반대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판정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중재합의에서 발생한 ODR에 참가중인 소비자가 관련된 경우, 또한 소비자가 속한 관할의 법이 소비자의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⁴¹⁾ 판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효과를 고려하여 문언을 본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실무작업반의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⁴²⁾

Track II에서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절차는 초안 제8조(촉진된 합의 단계의 끝) 내지는 초안 제8조 bis.의 구속력 없는 결정에 따라 종료될 것이며, 초안 제9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9) A/CN.9/762, para. 35

40) A/CN.9/762, para. 30

41) A/CN.9/762, paras. 50 and 52

42) A/CN.9/WG.III/WP.119, para. 17 참조

제1항 및 제2항

기존의 제1항은 촉진된 합의 단계가 만료함에 따른 절차의 시기와, 중립적인 제3자가 판정을 내릴 때 밟는 절차적 단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별도 항(제1항 및 제2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실무작업반은 합의 계약과 같은 판정이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제4항

결정 내지 판정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의 서면작성과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31조 제1항의 문언을 반영하였고, 또한 실무작업반이 제26차 회의에서 판정은 그 판정이 내려진 날짜와 중재장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반영하였다.⁴³⁾

제4항 bis.

제25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작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6조의 문언을 반영하고, 정의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⁴⁾ 제26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사무국에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현재 기준에 따라 “서명”이라는 문구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⁴⁵⁾

판정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4항 bis에 삽입되었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반영하였다. “전자 서명”이라는 정의 또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43) A/CN.9/762, para. 43

44) A/CN.9/744, para. 59

45) A/CN.9/762, para. 44; A/CN.9/WG. III/WP.119, paras. 40-41

2001년 전자서명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의 정의를 참조하였다.

제5항

실무작업반은 제26차 회의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는 간략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언을 삽입하자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⁴⁶⁾

제6항

제6항(기존의 제1항)은 중재 단계에서 절차의 시간적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배치되었다. 실무작업반은 중립적인 제3자가 판정을 내리는 시기와 관련하여 7역일의 연장을 허락하자는 데 동의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중립적인 제3자가 제6항에서 규정된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⁴⁷⁾ 또한 ODR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한 경우 평판에 기반을 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⁴⁸⁾

제6항 bis.

실무작업반은 판정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기로 결정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국에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제34조 제5항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을 대괄호 안에 삽입시켜달라고 위임한 바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⁹⁾

46) A/CN.9/762, para. 38

47) A/CN.9/739, para. 133

48) A/CN.9/739, para. 136

49) A/CN.9/762

제7항

제26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본항의 대괄호를 삭제하기로 동의하였다.⁵⁰⁾

제8항

중립적인 제3자가 결정을 내릴 때 “형평과 선에 기초하여(ex aequo et bono)”, 또는 공평과 신의에 기초하라는 요건은, 중재 결정과 관련한 준거법을 대비하기 위해 삽입되었다. 실무작업반은 제26차 회의에서 본조의 이전 문언이 적절하게 내지는 완벽하게 실체법의 요구를 기술하지 못했다는 데 주목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¹⁾

형평과 선에 기초한(ex aequo et bono) 결정은, 실무작업반이 ODR 절차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속도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형평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⁵²⁾ (특정 법체계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제3자가 공평할 것이라고 믿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분쟁에 대하여, 그가 결정하는) 이러한 중재유형은 현재 모든 법체계에서 알려진 바 없고, 사용되고 있지 않다. UNCITRAL 사무국이 작성한, 1985년 국제상거래중재모델법(2006년에 개정됨. 이하 “모델법”)의 설명문을 보면, 비록 모델법이 공평과 선의 원칙을 제28조 제3항에 적시하고 있지만, 그 분야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보다 모델법은 중재 합의를 할 때 설명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모델법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경우에 (공평과 선의 원칙에 기한 중재를 포함하여) 중재 심사는 반드시 계약조항을 따라야 하고 거래에 적용가능한 상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동일한 문구가 절차규정 본조

50) A/CN.9/762, para. 52

51) A/CN.9/ 762, para. 58

52) A/CN.9/716, para. 101

제8항에 반영되었다.

형평과 선의 원칙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5조에서, 즉 당사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중재 심사를 승인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실무작업반은, 일부 법제에서 양 당사자가 형평과 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중재를 할 때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조항에 있는 준거법의 포섭이 바람직할 여지가 있다.⁵³⁾ 그러나 해설에서 전술한 것 및 절차규칙 초안 제1조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절차규칙은 계약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준거법의 영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국내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절차규칙(cf. 모델법)은 해당 분야를 규율하고자 하지 않는다.

(2) 회기 중 논의사항

현재 소송의 신속과 경제성을 위하여, 촉진된 합의단계와 중재단계 모두 동일한 중립적인 제3자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태국, 스페인은 많은 나라의 입법에서 촉진된 합의 단계와 중재 단계를 모두 동일인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장은 당해 문제가 이미 많이 논의하였으나 아직 결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기에 뒤로 미루어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촉진된 합의 단계에서 가능한 사적인 집행방법(예를 들어 신뢰마크 trustmark)의 다양한 예를 제시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했다.

제1항

원안의 경우 촉진된 합의 단계 종료 시 중립적인 제3자는 계약적 합의단계에서 중재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과 함께 10일의 문서제출기

53) A/CN.9/WG.III/119, para. 30. 참조

간을 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싱가포르, 스페인은 초안 제8조 제2항에서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라는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촉진된 합의 단계에서 중재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일정기간(예컨대 3일 이내)을 제공하고, 그 후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장은 구체적인 문언을 사무국에 위임하였다.

제2항과 제3항

터키는 제8조 bis. 에서처럼 제2항과 제3항의 위치를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의장은 이를 수용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위치를 변경하고 사무국에서 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제4항 bis.

본 규정은 UNCITRAL의 기존 문건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개념을 포함하여 요건을 정했다. 사무국에서는 이를 개념정의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본조에서만 반영하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은 중재합의의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서면 개념을 제9조에 제한하지 않고 제2조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무국이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반영하였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writing”이라는 문언을 재정의하도록 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6항

본 규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판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제6항의 마지막 문장의 목적은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기간을 위반한 중재인에 대한 법률효과는 ODR 제공자에게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부과하면 될 것이나(통상적으로 중

재인에게 빨리 결정하도록 권고할 것임), 여기서는 이 부분을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중재판정의 기간이 1년을 넘어선 경우 당해 중재판정을 무효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일본, 콜롬비아, 스페인, 체코, 중국은 UNCITRAL 중재법의 경우 기한이 없으나, 본 절차규칙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하여 기한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현재 규정상 “반드시” 10일의 기간 내에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을 “10일의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하는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당해 규정을 권장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에 의장은 ODR 절차가 매우 빠른 진행을 전제로 하고, 기간을 넘는 경우 중재인의 교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판정이 기일을 넘긴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이를 권장규정으로 변경하여 사무국에서 정리토록 하였다.

제6항 bis.

일본, 터키, 체코, 크로아티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중국은 본 규정이 지난 회기의 논의를 반영하여 중재판정의 공개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프랑스가 공개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질문을 하였는데, 사무국은 누가 공개할지를 정하지 않은 것이 모델법의 입장이므로 ODR 제공자, 당사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캐나다는 당사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질문하였는데,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ODR 제공자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다루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의장은 내용을 유지하며, 문언을 사무국에 위임토록 하였다.

제8항

본 규정은 중재판정의 기준을 추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UNCITRAL 문건에서 “ex aequo et bono(형평과 선의 원칙)”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차용한 것이다. 이에 크로아티아, 일본, 이집트,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ex aequo et bono”의 관념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기를 제안하였다. 특히 크로아티아는 위 문구를 “실체법 원칙에 기반하여(on the basis of legal substantive principles)⁵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장은 본 개념에 대한 통일된 관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무국에서 이를 다시 규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54) 절차규정 전문에 의하면 실체법적 원칙들을 부록 내지 다른 문서 형태로 추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위 규정을 두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UNCITRAL ODR W/G의 제28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제 1 절 ODR W/G의 논의 방향성 검토

1. 검토 예상 조문

(1) 초안 제9조 bis. (판정의 정정)

“판정의 수신 이후 [5]역일 내에 당사자 일방이 중립적인 제3자에게 중재의 계산 오류, 사무적 오류, 오자, [유사한 성질의 누락, 기타 모든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중립적인 제3자가 당해 요청이 정당하다고 여긴 경우, 그는 요청 수신 후 [2]역일 이내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정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정은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고] 판정의 일부를 이룬다. [중립적인 제3자는 판정의 전달 후 [5]역일 이내에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실무작업반은 제26차 회의에서 초안 제9조 bis.가 판정의 정정을 대비하여 추가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⁵⁾ 이와 유사하게 판정의 번역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간단함을 높이기 위하여 초안에 삽입되지 않았다.

(2) 초안 제9조 ter. (내부 심사 방법)

“[1. 당사자 일방은 판정의 통지 후 10역일 이내에, ODR 플랫폼을 통하여 ODR 제공자에게 (a) 중재의 장소가 당사자에게 불공정하게 편향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b) 정당한 절차를 밟을 당사자의 권리를 침

55) A/CN.9/762, paras. 55-56

해하지 말아야 하는 절차규칙의 근본에 심각한 일탈이 있음을 이유로 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ODR 제공자는 5역일 내에 당해 요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i) 당해 요청의 대상이 되는 ODR 절차와 무관하고 (ii) ODR 제공자가 관리하는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속한]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가 지명되면, ODR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그 지명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3.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된 지 7역일 이내에 당해 취소요청에 대한 종국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판정이 무효화되면, ODR 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중립적인 제3자가 지명된다.]”

실무작업반은 일반절차규칙에서 ODR 제공자가 2단계 절차적 심사 방법을 제한된 상황에서 만드는 것을 허락하거나 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엄격하게 절차적이고 본안과 무관한 심사 방법은 보다 독립적인 ODR 절차를 제공할 것이고, 절차적 불공정의 의미와 효과 중재사후적 온라인 심사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한 심사 방법은 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관할법보다 낮은 단계의 절차적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때, 심사 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내부 심사는 본안에 관한 심사가 아닐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방법이 절차의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중재장소로서 법원에 의지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실현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방법이 ODR 제공자가 매년마다 수많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맥락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초안 제9조에 의해 내려진 판정에 관한 중재 단계에 대해서만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3) 초안 제10조 (절차의 장소)

“[ODR 제공자는 절차규칙의 [Track I] 부록에 적시된 목록 중에서 절차의 장소를 선택한다.]”

실무작업반은 중재장소의 결정에 대한 의미가 반드시 규칙에 서술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⁶⁾ 중재를 제외하면 어느 단계에서도 절차의 중심지는 상관없기에, 초안 제10조는 Track I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

중재를 규율하는 절차법을 확립하고 불확실성을 피하며 판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재일지라도 중재는 반드시 중재의 중심지 내지 장소를 가져야만 한다. 1958년의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소위 “뉴욕 협약”)이 중재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당해 중심지는 반드시 가맹국에 위치하여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Track I의 부록에, 뉴욕 협약 및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이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의 가맹국 목록을 기반으로 하고, 그 국가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을 기반으로 한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긴 목록 내지 짧은 국가 목록을 포함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어떻게 중심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즉, ODR 제공자가 현재 초안 제10조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중심지를 사전에 결정된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제공자들이 자신의 지역 하에서 중심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또는 대

56) A/CN.9/762, para. 41

체 옵션이 보다 더 선호될지 고려해야 한다. 모든 ODR 절차에 대한 단 하나의 중심지의 예를 들자면,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경우 그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의 장소는 스위스이다. 실무작업반이 이와 같은 단일한 “세계적 중심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고려한다면, 그 중심지는 초안 제10조 및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조항에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보다 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다.

(4) 초안 제11조 (ODR 제공자)

“[ODR 제공자는 분쟁해결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사용하는 ODR 제공자가 중재조항에서 구체화되도록 하는 수단을 일반절차규칙에 담기 위하여 본조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체화는 최대한의 투명성 및 확실성, 그리고 구매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절차규칙에서 “ad hoc” 절차의 부재를 예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ODR 절차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⁵⁷⁾

실무작업반은 분쟁해결조항이 ODR 제공자 및 당해 사건에서 제공자가 어떻게 선택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5) 초안 제12조 (절차상 언어)

“[1. 당사자의 합의의 대상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지명 이후 즉시 [제[x]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고려하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 또는 언어들을 결정해야 한다.]
“2. 아래 제3항에 따라 실패한 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은 반드시 (본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합의된) 절차상 언어로 제출되어야 하고, 한 언

57) A/CN.9/WG.III/WP.119 para. 39

어 이상의 절차상 언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언어여야 한다.

“3. ODR 절차 과정에서 통신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및 보충문서 내지 제출물은 그 내용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언어로 제출될 수 있다.

“4. 분쟁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나 제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해당 서류나 제출물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당해 서류를 [타방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다른 절차상 언어] [실패한 경우, 타방 당사자가 자신의 통지 내지 응답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포함시킨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6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초안 제12조 (절차상 언어)에 대해 새로운 문구를 제안한 바 있다.⁵⁸⁾ 초안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문언 내지 기타 UNCITRAL 문건들과 문언상의 일관성을 위함 해당 문구가 포함되었다.

제25차 회의 뿐 아니라 제26차 회의에서도, 실무작업반은 다음 문장들과 함께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⁵⁹⁾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을 다루는 ODR 제공자는 반드시 자신의 시스템과 규칙 및 중립적인 제3자가 그러한 차이를 신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를 기술하기 위한 방법을 두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이와 같은 조항이 ODR 제공자를 위한 최소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놓이는 편이 더욱 적절한지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실무작업반은 이전에 일반규칙이 ODR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바 있고,⁶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작업반은

58) A/CN.9/762, paras. 75-81

59) A/CN.9/762, para. 75; A/CN.9/739, para. 143

60) A/CN.9/744, para. 78

일반규칙의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는 ODR 제공자에 의해 시작되고 사용되는 시스템을 위임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이 제26차 회의에서 제1항에 관해 제안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ODR 절차는 반드시 ODR 절차 개시 때 당사자들이 동의한 언어(들)로 처리되어야 한다.” 실무작업반이 절차상 언어가 반드시 절차의 시작단계에서 동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초안 제 4A조 제4항 (g)호 및 제4B조 제3항 (f)호의 문언들은 그러한 동意的 가능성을 규정하기 위해 약간 수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규정들이 각 당사자에게 단 하나의 선호하는 언어만 적시할 것을 현재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한 언어에 대해 동의하거나, 내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언어를 제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두 언어 모두 “절차상 언어”가 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무작업반은 또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절차상 언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이 제26차 회의에서 제2항에 관해 제시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이 절차상 언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제[x]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고려하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 또는 언어들을 결정해야 한다.”

명료성과 간결성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은 위 86번 및 87번 문단에 적시된 바와 같이 두 조항을 제안하였고, 이는 통합되었고 재구성되어 현재 초안 제12조 제1항을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제1항은 현재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9조의 문언을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이 제26차 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는, 당사자들이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대괄호 안에 유지되었다.

실무작업반은 중립적인 제3자가 현재 제7조 제1항 bis.에 적시된 권한, 즉 아직 결정되지 않은 조문의 언급보다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2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은 본 항이 초안 제3조 (통신)에 배치되는 편이 더 나은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4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은, 만일 필요하다면 “타방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또는 초안 제4A조 (신청) 내지 제4B조 (응답)에 따라 타방 당사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로 지정한 다른 절차상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실무작업반은 몇몇 대표단이 서류 번역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잠재적 서류 번역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¹⁾

실무작업반은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증명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ODR 제공자가 관련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초안 제13조 (대리)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보조한다. 그의 이름이나 지정된 전자주소 [및 수권행위]는 반드시 ODR 제공자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61) A/CN.9/762, para. 80

(7) 초안 제14조 (책임의 예외)

“[국제적 범죄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허락하는 모든 한도 내에서, 이 규칙 하의 ODR 절차와 관련하여 생략된 부분이나, 기타 법을 기반으로 한 ODR 제공자 및 중립적인 제3자를 향한 모든 신청을 포기한다.]”

초안 제14조는 ODR 절차와 관련된 사람의 책임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6조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된 것이다.

(8) 초안 제15조 (비용)

“[중립적인 제3자는 비용에 관한 어떤 [결정] [판정]도 내려서는 안 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비용”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제3자가 일방 당사자(보통은 패소 당사자)로 하여금 타방 당사자(보통은 승소 당사자)에게, 승소 당사자가 사건을 제기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금전을 지불하라는 명령에 적용되는 것이다.

제 2 절 ODR W/G의 제28차 회의 대응 전략을 위한 사전문건 번역

지금까지 제27차 회의 이전까지 진전된 ODR 논의와, 제27차 회의에서 직접 논의되었고 의장과 사무국에 의해 정리된 회의내용을 살펴

보았다. 제27차 회의 결과에 따라 절차규칙은 Track I과 Track II 별로 각각 구분되어 독립된 두 개의 세트로 나뉘게 되었다. 사무국에서는 제27차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문언을 조정한 새로운 초안을 사전 공개하였다. 아울러 사무국은 제28차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절차규칙을 완성해나갈 때 주목해야 할 지침을 적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사전문건, 실무문서 123 및 123/Add.1을 각각 번역하였다. 이하의 문서를 읽을 때에는 실무문서 123이 Track I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23/Add.1은 Track II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트랙에서 중복되는 조문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조문의 번역 밑에 이전 초안에서의 변경점과, 차기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적혀있다. 특히 제27차 회의에서 제시된 쟁점이 이 문서들에는 새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문 전체에서 기존 쟁점과의 중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해당 문서를 통해 제28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제27차 회의까지 주요 쟁점은 ODR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실체법적 원칙을 주로 검토했다면,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각 트랙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으로 실체법적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다른 실체법적 검토 및 절차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Track I에 관한 실무문서 123 번역

(1) 서론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제43차 회의(2010. 06. 21.~07. 09., 뉴욕)에서,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B2B 및 B2C 거래 포함) 영역과 관련된, 온라인 분쟁해결(ODR) 분야에 관한 작업에 착수하는 실무작

업반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 제44차 회의(2011. 12. 13. - 12. 17., 비엔나) 및 제45차 회의(2012. 06. 25. - 07. 06., 뉴욕) 에서,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B2B 및 B2C 거래 포함)와 관련된, 온라인 분쟁 해결(ODR) 분야에 관한 실무작업반의 위임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작업반의 제22차 회의(2010. 12. 13. ~ 12. 17., 비엔나)에서, 실무작업반은 ODR의 주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또한 실무작업반은,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ODR)의 일반절차규정(generic procedural rules, 이하 “일반절차규정”)의 초안의 작성을 준비함에 있어, 일반절차규정에서 규율하는 법적 쟁점에 다음과 같은 유형, 즉 B2B와 B2C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경을 넘어선 소액의 대량거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제23차 회의(2011. 05. 23. - 05. 27., 뉴욕)부터 제26차 회의(2012. 11. 05. - 11. 09., 비엔나)까지, 실무작업반은 기존에 작성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일반절차규약의 초안을 마련해나갔다.⁶²⁾

제26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분쟁 전에 이루어지는 중재합의(“사전중재합의”)가 체결된 경우에, 소비자에게 사전중재합의가 구속력이 있고, 다른 한편 소비자에게 사전중재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법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절차규정을 두 가지 방식(two tracks)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⁶³⁾

제27차 회의(2013. 05. 20. - 05. 24., 뉴욕)에서, 많은 대표단들은, 실무작업반이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를 고안함에 있어 사전중재합의가 소비자를 구속하는 법제와 그렇지 않은 법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62) A/CN.9/ WG.III/WP.107, A/CN.9/WG.III/WP.109, A/CN.9/WG.III/ WP.112 및 부록, A/CN.9/WG.III/WP.117 및 부록

63) A/CN.9/762, paras. 13-25, and annex

(2) ODR 시스템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논의지침

실무작업반은 오는 제2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ODR 시스템의 일반 구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ODR 제공자 및 ODR 플랫폼의 바람직한 역할,⁶⁴⁾ ② 상인에 의해 사용되는 신뢰마크 내지 기타 다른 품질 인장,⁶⁵⁾ ③ 권고나 판정 내지 합의계약의 “사적 집행 방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3자의 개입 여부가 바람직한지, 또는 가능한지 그 여부,⁶⁶⁾ ④ 상인이 실무상에서 어떻게 ODR 제공자를 선택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양자 간의 관계.

또한 실무작업반은 일반절차규칙의 계약법적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절차규칙의 조항들이 날로 진보하고 있기에, 마치 이 규칙의 “소유권”이 분쟁 당사자 내지 상인이 아니라 마치 ODR 제공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일반절차규칙이 당사자 간의 계약문서로 협상한다기보다, ODR 제공자가 규칙을 제공하거나 이것을 수정하여 상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상인들은 따라서 ODR 제공자와 그가 제공하는 특정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 접촉할 것이다. 실무작업반은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절차규칙의 기능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절차규칙 조항들의 이와 같은 사용이 적용 가능한가? 지배적 법률이 일반절차규칙 내(Track I)에 명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무상으로 ODR 제공자가 적용하기 편한 지배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실무작업반은 또한 ODR 제공자와 상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적 고려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립성 또는 독립성에 관한 쟁점이 지침이나 기타에 언급되어야만 하는가? 실무작업반은 현재 고안되고 있

64) A/CN.9/WG.III/WP.119, para. 22

65) A/CN.9/WG.III/WP.124

66) A/CN.9/WG. III/WP.124

는 ODR 시스템의 맥락 하에서, 단일한 상인 또는 시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설립된 ODR 제공자가 제기하는 특정 문제가 언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3) 두 가지 트랙 방식 제안

실무작업반은, 제27차 회의에서 두 가지 트랙병존방식 시스템을 버리고 오직 B2B를 위한 절차규칙을 만드는 것에 관해 고려한 적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⁶⁷⁾ 그리고 두 가지 트랙 시스템(이하 “두 가지 트랙 방식 제안”)에 관해 보다 진일보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 제안이 장래 회의의 기초로 고려되는 데 충분한 지지를 받았음을 상기해야 한다.⁶⁸⁾ 조문은 절차규칙 Track I에만 관련된 두 가지 트랙 방식 제안에 따라 작성될 것이며, 제1조 제1(a)항, 제2조 제5(a)항 및 부록을 구성하도록 제안된 새 조항들이 작성되었다.

(4) 조문 초안 검토

1) 전문 및 도입규정

초안 전문

“1. UNCITRAL의 온라인 분쟁해결 규칙(이하 ”규칙”)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국경을 넘어선 소액의 대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2. 규칙은, [규칙에 부속된 부칙과] 규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문서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분쟁해결 구조와 함께 사용된다:
[(a) 온라인 분쟁해결 제공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
[(b) 중립적인 제3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

67) A/CN.9/769, para. 30

68) A/CN.9/769, para. 43

[(c)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리들;]
[(d) 국경을 넘어선 강제집행 방법;]
[...];

“[3. 별개 및 추가적인 모든 [규정들][문서들]은 당해 규정과 부합해야 한다.]”

비록 실무작업반이 온라인 분쟁해결은 소액·대량 거래에서 제기된 분쟁에 관련된 특정 사항만을 관장한다고 정의했지만,⁶⁹⁾ 실무작업반은 “대량 거래”의 의미를 전문에 명확히 밝힐 것을 고려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문언이 규칙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적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초안 제1조 (적용 범위)

“1. 본 규칙은 거래 시점에 전자통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 거래와 관련되며 본 규칙의 범위에 포함되는 분쟁은 규칙에 따라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경우 적용된다.

[“1a. 본 규칙은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부칙 X에 적시된 국가의 소비자인 경우, 분쟁 사후에 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1 bis. (1)항에 상술된 분명한 합의는 당해 거래로부터 분리된 합의와, 당해 거래에 관련되고 ODR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분쟁은 ODR 규정에 따라 ODR 절차[, 그리고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될 Track I 또는 Track II]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해결될 것임이 매수인에게 평이한 언어로써 공지될 것을 요한다.” (“분쟁해결조항”)]

69) A/CN.9/ 716, para. 48; A/CN.9/WG.II/WP.105, para. 4

[“2. 본 규칙만이 신청에 적용된다:
(a) 매매 또는 임차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전혀 인도되지 않거나, 적시에 인도되지 않거나, 제대로 청구되거나 결제되지 않거나, 및/또는 거래 당시에 합의한 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b)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온전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선택조항 1: [“규정은 매수인이 거주하는 곳의 준거법이 ‘분쟁을 ODR 규정의 적용 범위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합의가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분쟁발생 후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거나 거래 당시 그러한 합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매수인을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조항 2: [“이 규정들은 이 규정들 중 어느 부분이라도 당사자들이 해당 규정이 우위에 있다고 다룰 수 없는, ODR 절차에 적용 가능한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DR 절차를 규율한다.]

제1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은 “규칙에 따라 ODR에 의해 해결되는”이라는 문언이 “규칙에 따라 해결될”이라는 문언으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초안의 명확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ODR이 규칙 제2조에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제1a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의 제27차 회의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본항이 대괄호 안에 새로이 삽입되었다.⁷⁰⁾ 이는 규칙의 Track I에만 적용되며, 동시에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법제와 법적 지위(예컨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법제 목록과 부록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이러한 법

70) A/CN.9/769, paras. 32 and 43

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절차규칙의 Track I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이 제1a항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실무작업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 3항 선택조항 1을 삭제할 수 있다.

본항의 신설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절차규칙의 Track I이 부속서 (Annex)에 적시된 법제에 속한 소비자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곧 절차규칙 하의 온라인 분쟁해결이 분쟁 사후에 작동하는 곳이다. UNCITRAL 절차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의 국가 목록을 적시한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무작업반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만일 어떤 국가가 그 목록을 수용하는 경우 이것의 법적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당해 국가가 사전중재합의를 자국법의 법적 지위로 간주하는 것인가? 내지는 자국 소비자에게 ODR 맥락 하에서 중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시적 참조를 표현하는 것인가? 만일 어떤 국가가 당해 목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국가는 자국 법에 관한 관점을 표현한 것인가?

② 목록을 수용하는 결정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컨대 다양한 국가들은 복잡한 소비자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쟁 사전 내지 사후 중재 합의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어떤 법적 (국제공법적) 기초 및 어떤 기제에 따라 국가가 절차규칙 집합에서 목록을 수용하고, 실무적 기능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수용과 철회를 표현할 수 있는가?

④ 어떻게, 그리고 누가 국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국가들이 스스로 선언하는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며 그 시한은 없는가?

⑤ 어떤 주체가 목록에 권위를 부여하고, 작성하고 유지하는가?

⑥ 상인들에게 새로운 승인 내지 수용에 대해 계속 고지할 책임은

상인 스스로에게 있는가, 혹은 목록의 관리자에게 있는가? 목록의 유지와 관련하여 책임 문제가 예측가능하지 않은가?

⑦ 만일 어떤 국가가 당해 소비자와 연관된 온라인 절차 도중 목록을 수용한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내지는 그 수용이 소비자의 계약 작성 후 분쟁 발생 전에 일어난 경우 어떠한가?

⑧ 절차규칙 계약조항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만일 당사자들이 부속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에 실무적 및 법적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⑨ 사후분쟁중재에 동의한 목록에 포함된 법제에 속한 소비자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⑩ 만일 어떤 구매자가 “잘못된 트랙”에 들어간 경우 법적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상인이 제공한 Track I 국가 목록에 소비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거나, 그가 자신을 사업자 내지 소비자로 잘못 정의한 경우에 어떠한가?

⑪ 실무작업반이 그러한 목록을 포함하는 UNCITRAL 장래 문헌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적 의미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초안 제2조 (정의)

“절차규정 내에서:

ODR

“1. ‘ODR’은 전자통신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촉진된 분쟁해결 방법인 온라인 분쟁해결을 의미한다.

“2. ‘ODR 플랫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ODR에서 사용되는 전자통신을 생성, 전송, 수신, 저장, 교환 또는 처리하는 시스템인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의미하며, 이는 ODR 절차에서 ODR 제공자가 지정한다.

“3. ‘ODR 제공자’는 [ODR 플랫폼을 지정하고], ODR 플랫폼의 관리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ODR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체인 온라인 분쟁해결 제공자를 의미한다.

당사자

“4. ‘신청인’은 통지를 발부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ODR 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5. ‘피신청인’은 당해 통지를 수신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TBD: To be discussed; 논의필요사항]

[“5a. ‘소비자’란 근본적으로 개인, 가족, 내지 가사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6. ‘중립적인 제3자’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돕거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개인을 의미한다.

통신

“7. ‘통신’이란 ODR과 연관되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누구든 진술, 선언, 요구, 통지, 응답, 제출, 통고 또는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8. ‘전자통신’이란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누구든 전자, 자기(magnetic), 광학은 물론 EDI, e-mail, 텔레카피, SMS, 웹컨퍼런스, 온라인 채팅, 인터넷 포럼 또는 마이크로블로깅을 포함하되 한정하지 않는 유사 수단에 의하여 발생,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수단을 통하여 통신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컴퓨터나 다른 전자 기기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 혹은 변형된 문서 객체나 사진, 글, 소리와 같은 아날로그 형식의 정보도 포함한다.

“당사자”라는 표제는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정의 및 대괄호 안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못된 표기이다. 그러나 절차규칙이 종종 “당사자”라는 단어를 분쟁 당사

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무작업반은 “당사자”라는 단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표제어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작업반의 고려를 위하여 표제어(TBD)가 삽입되었다.

제5a항은 대괄호 안에 삽입되어, 실무작업반의 제27차 회의에서 제안된 두 가지 트랙별 방식에 반영하였다.⁷¹⁾ 이 조항은 오직 절차규칙 Track I에만 포함될 것이다.⁷²⁾

초안 제3항 (통신)

- “1. ODR 절차 과정 중의 모든 통신은 ODR 제공자가 지정한 ODR 플랫폼을 통하여 ODR 제공자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ODR 플랫폼의 전자 주소는 분쟁해결조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 “2. 각 당사자가 이 규칙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거래 관련분쟁에서 ODR 을 이용하기로 명백한 합의가 된 때] 반드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전자 접근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 “3. 절차규칙 하에서의 모든 통신을 할 목적으로 한 신청인의 지정된 전자주소는, 반드시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ODR 제공자에게 통지된 것이어야 하며, ODR 절차 도중에 어느 때라도 ODR 제공자에게 최신 정보로 갱신된 것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통지할 때 전자 주소를 최신으로 갱신한 것을 포함한다.)]
- “4. ODR 제공자가 피신청인에게 하는 통지를 전달할 전자 주소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제2항의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ODR 제공자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 통지의 발신 이전에 신청인이나 ODR 제공자가 최신 정보로 갱신한 것이어야 한다. 이후로, 피신청인은 ODR 절차

71) A/CN.9/769, paras. 32 and 43

72) A/CN.9/769, para. 32

도중 어느 때라도 ODR 제공자에게 자신의 전자 주소 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5. ODR 제공자가 당사자들에게 제6항의 능력을 통지하고, 제1항에 따라 통신이 ODR 제공자에게 제출된 경우 이는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수신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통신을 수신하는 데 실패한 경우 그가 타당한 이유를 밝힌다면, 중립적인 제3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ODR 제공자는 즉시 모든 당사자[및 중립적 제3자]에게 지정된 전자 주소로, 당사자들과 중립적인 제3자 간의 전자적 통신의 수신을 확인하였다고 전달하여야 한다.

“7. ODR 제공자는 모든 당사자들 및 중립적인 제3자에게 ODR 플랫폼에서 모든 전자적 통신이 가능함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8. ODR 제공자는 절차에서 협상 단계의 결과 및 촉진된 합의 단계의 개시를 당사자 및 중립적인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절차의 촉진된 합의 단계 만료 역시 마찬가지로이며; 관련된 경우 절차의 중재 단계 개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무작업반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당한 수의 대괄호가 삭제되었고, 당사자들이 분쟁에 다양한 전자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1항에 대하여, ODR 제공자와의 통신을 위하여 어떻게 통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라는 문언은, 절차규칙의 다른 규정들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삭제되었다.

제6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은 수령의 인식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절차규칙의 시한 내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제8항은 ODR 절차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실무작업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었다.⁷³⁾

2) 절차의 개시

초안 제4A조 (통지)

- “1. 신청인은 제4항에 포함된 양식에 따라 통지를 ODR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해 통지는 가능한 한 신청인이 의존하는 모든 문서 및 다른 증거들과 동반되거나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그 후 그 통지는 ODR 제공자에 의하여 즉시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것이다.][ODR 제공자는 그 통지를 ODR 플랫폼에서 접할 수 있음을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 “3. 제1항에 따라 ODR 제공자에게 통지가 전달되고 ODR 제공자가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능력을 통지한 때, ODR 절차가 개시된[것으로 간주한]다.
- “4.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신청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주소; 당해 ODR 절차에서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 주소;
 - “(b) 피신청인의 이름과 전자 주소; 신청인에게 알려진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전자 주소;
 - “(c) 당해 신청의 배경;
 - “(d)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해결책;
 - “(e) 신청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와 관련한 특정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현재 다른 구제 방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
 - ”[“(f) 신청인의 거소];

73) A/CN.9/769, paras. 46-47, para. 84, paras. 86-87

”[(g) 신청인이 선호하는 절차상 언어;]
“(h) 신청인 및/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의 여타 모든 신분 증명, 인증 방법을 포함한 전자 양식의 서명;
“[...]”

초안 제4B조 (응답)

“1. 피신청인은 ODR 제공자에게 제3항의 내용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7]역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수신했음을 전달해야 한다. 당해 응답은 가능한 한 피신청인이 의존하는 모든 문서 및 다른 증거들과 동반되거나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선택조항 1 : 피신청인은 통지에 대한 응답과 함께, 신청인이 통지에서 밝힌 거래와 동일한 것에 대해 ODR 제공자에게 동일한 ODR 플랫폼을 사용하여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대신청')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통지가 ODR 제공자에게 접수된 후 [7]역일 이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ODR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과 반대신청은 함께 다뤄져야 한다.]

[반대신청은 제4A조의 제4항 (c)호와 제4항 (d)호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선택조항 2: “피신청인은 통지와 함께 ODR 제공자에게 반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반대신청'이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으로,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ODR 제공자에게] 한 통지와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다.”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통지가 ODR 제공자에게 접수된 후 [7]역일 이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ODR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과 반대신청은 함께 다뤄져야 한다.]

[반대신청은 제4A조의 제4항 (c)호와 제4항 (d)호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3. 응답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 “(a) 피신청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 주소; ODR 절차 내에서 응답자를 위해 행동하도록 허가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주소;
- “(b) 통지에 적시된 당해 신청의 근거에 대한 응답
- “(c)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해결책;
- “(d) 피신청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와 관련한 특정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현재 다른 구제 방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
- “[(e) 피신청인의 거소];
- “[(f) 신청인이 위 제4A조 제5항 (g)호에 따라 제시한 절차상 언어에 동의하는지, 또는 선호하는 다른 절차상 언어가 있는지 여부;]
- “(g) 피신청인 및/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의 여타 모든 신분 증명, 인증 방법을 포함한 전자 양식의 서명;

“[...]”

실무작업반은, 초안 제4A조 제4항 (c)호와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3항 (b)호의 기존 문언인 “진술과 주장”이 “당해 신청의 근거”라는 문언으로 교체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3) 협 상

초안 제5조 (협상 및 합의)

협상

“1. [제4B조에 따라 응답[과, 해당되는 경우 반대신청]을 ODR 제공자[와, 해당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전달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ODR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통신 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시도해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4B조 제3항의 형식에 합치하도록 ODR 절차 개시 7역일 이내에 ODR 제공자에게 응답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되며, ODR 절차는 자동으로 촉진된 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ODR 제공자가 제6조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에 따라 즉시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3. 만일 당사자들이 10역일 이내에 응답[및 그 신청인에 대한 통지]을 ODR 플랫폼에 제출하지 않아 협상을 통해 당해 분쟁을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ODR 절차는 자동으로 촉진된 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ODR 제공자는 제3조 제8항에 따라 즉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따라 즉시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4. [응답을 제출하기 위해][합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들은 1회의 시한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10역일 이상의 연장은 할 수 없다.

합의

“5. [협상 단계 중] [및/또는 ODR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에 이르면, 해당 합의 조항이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서 ODR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실무작업반은, 제2항의 시한에 관해 명확성을 위하여 7역일이라는 시한이 “ODR 절차 개시”(이는 제4A조 제3항에서 정의된다)라는 문언으로 연장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제3항의 문언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절차가 이동할 때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반영하여 새로이 삽입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의 제27차 회의 합의사항인, 합의 계약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⁷⁴⁾ 제5항에서 대괄호 안에 있는 문언은 유지되었다. 초안 제8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과 관련하여 도달한 합의사항 역시 동일한 원칙을 보유하고 있다. 제27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제8조 제1항의 당해 문언이 재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⁷⁵⁾

실무작업반은 초안 제5조 제5항이 ODR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지,⁷⁶⁾ 그리고 그 결과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여 초안 제8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을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4) 중립적인 제3자

초안 제6조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 “1. ODR 제공자는 [ODR 제공자가 보유하는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에서 선택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해야 하고, 각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명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2.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절차규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의 수행과 완료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 수락 당시에 자신의 독립성을 선언하고, ODR 제공자에게 자신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이 생길만한 상황을 밝혀야 한다. ODR 제공자는 각 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는 그의 지명 당시부터 ODR 절차 동안 지체 없이 ODR 제공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밝혀야 한다. ODR 제공자는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4. 당사자 일방은 중립적인 제3자의 (i) 지명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역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또는 (ii) 사실이나 상황에

74) A/CN.9/769, para. 51

75) A/CN.9/769, para. 53

76) A/CN.9/WG.III/WP.119/Add.1, paras 11-13

대한 주의가 중립적 제3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실이나 상황을 적시하여, 지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반대

“5. 일방의 당사자가 위 제4항 (i)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중립적인 제3자는 자동으로 결격이 되고, 제6조 bis.에 따라 교체된다. 각 당사자는 각각의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임명의 통지에 대한 최대 [3]번의 이의제기 기회를 가지게 되고, 위 제4항 (ii)의 대상이 되는 ODR 제공자에 의한 중립적 제3자의 다음 지명이 마지막으로 될 것이다. 대신 2일 이내에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명이 최종지명이 되어 위 제4조 (ii)의 대상이 될 것이다.

6. 당사자 일방이 위 제4조 (ii)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해 ODR 제공자는 [3]일 이내에 당해 중립적인 제3자가 교체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보 제공에 대한 반대

“7. 일방의 당사자는 협상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ODR 제공자가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일의 기간이 만료되고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ODR 제공자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ODR 플랫폼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의 수

“8. 중립적인 제3자는 한 명으로 한다.”

실무작업반은 제27차 회의에서, 초안 제6조가 Track I과 Track II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Track II의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하여 단순화되고 일원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⁷⁷⁾ 위 문단 35에 적시된 문언은 실무작업반이 초안 제6조를 Track I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본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⁷⁸⁾

실무작업반은 (A/CN.9/WG.III/WP.119/Add.1에 포함되어있던) 제4항이 삭제되었으며, 제7항은 새로운 초안 제6조 bis.로 재배치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립적인 제3자의 교체 내지 사임에 대한 조문이 별도의 조문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실무작업반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⁷⁹⁾ 또한 실무작업반은 초안 제6조에 새로운 표제어가 가독성과 명확성을 위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제1항은 중립적인 제3자의 신분확인을 통해 당해 지명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리적 반대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되었다.⁸⁰⁾ 실무작업반은 만일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름이 충분한지 고려해야 한다.

제3항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밝혀진 사실을 유지하고, UNCITRAL 중재규칙 제11조 (2010년 수정)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반영해달라는 실무작업반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수정되었다.⁸¹⁾ 또한 “즉시”라는 문언이 마지막 문장에 추가되어, 절차규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제2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A/CN.9/WG.III/WP.119/Add.1에 포함되어있던 초안 제6조 제5항 bis.는 명확성을 위하여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분리되었다.⁸²⁾ 제5항은 새로운 초안 제6조 bis.의 존재를 반영하여 약간 수정되었다.

77) A/CN.9/769, para. 107

78) A/CN.9/769, para. 107

79) A/CN.9/769, paras.118-119; see also A/CN.9/769 paras. 128-129

80) A/CN.9/769, paras. 109-110

81) A/CN.9/769, paras. 115-117

82) A/CN.9/769, paras. 124-125

초안 제6조 bis. (중립적인 제3자의 사임 내지 교체)

“중립적인 제3자가 절차 도중에 스스로 사임하거나 또는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ODR 제공자는 ODR 플랫폼을 통해서 제6조에 따라 그를 대신 할 새로운 중립적 제3자를 지명한다. 절차는 중립적인 제3자가 교체되면서 자신의 기능 수행을 중지한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제27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절차규칙에 중립적인 제3자의 사임 및 교체에 대한 총론 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였다.⁸³⁾ 이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불공정함이나 독립성에 대한 사유로 스스로 사임하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였다.

초안 제7조 (중립적인 제3자의 권한)

“1. [ODR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요건과] 절차규칙의 대상이 되는, 중립적인 제3자는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ODR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1. bis. 절차규칙 하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제3자는,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 소모를 피하며 분쟁해결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ODR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면서, 중립적인 제3자는 언제나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2. 제6조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들과 ODR 제공자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ODR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 관련성은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ODR 절차는 중립적 제3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3. 절차과정 중 언제라도 중립적 제3자는 (비용에 대한 조건 혹은 중립

83) A/CN.9/769, para. 119

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적인 정보, 서류, 제출물 기타 증거의 제공을 [요구][요청] 또는 허용할 권한이 있다.

“4. 중립적인 제3자는 분쟁을 ODR로 처리하는 것을 언급하는 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그 자신이 속한 법체에 따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분쟁해결조항은 당해 계약의 다른 조항과 독립된 합의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분쟁해결조항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절차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통지를 수신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그 수신에 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칙에 규정된 시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ODR 절차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전달을 받은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그 수신에 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칙에 규정된 시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실무작업반은 명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수의 대괄호가 삭제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UNCITRAL 중재규칙 (2010년 판) 제27조 제4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은 제2항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문제되는 증거의 중요성, 유효성 및 능력성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제3항이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특히 중립적인 제3자가 제1항의 도덕에 의해 부과된 광범위한 재량과 관련하여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다.

5) 촉진된 합의

초안 제8조 (촉진된 합의)

“1.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이 합의 (“촉진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시도하도록 의사소통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합의 계약에 이르면, 그러한 합의 계약이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 시점에서 ODR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2. 만일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이후로 10영업 내에 자신들의 분쟁을 촉진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촉진된 합의 단계의 만료”), ODR 절차는 제9조에 따라 자동으로 중재로 넘어가게 되고, 당해 ODR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제3조 제8항에 따라 절차가 합의 단계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즉시 통고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지난 회의에서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이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고려했던 사항을 유념할 수 있고, 초안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이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⁸⁴⁾

실무작업반이 촉진된 합의 절차 단계에서 중재 단계로 넘어갈 때 당사자들에게 통고가 있어야 한다고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항이 수정되었다.⁸⁵⁾ 그리고 촉진된 합의 단계의 만료는,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통지보다 중립적인 제3자의 당사자에 대한 통고와 연결되어야만 한다.⁸⁶⁾ 실무작업반은 제27차 회의에서 제안된 문언, 즉 “당해 ODR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제3조 제8항에 따라 절차가 합의 단계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즉시 통고

84) A/CN.9/769, para. 53

85) A/CN.9/769, paras. 46-50

86) A/CN.9/769, para. 54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보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제2항에 삽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6) 중재

초안 제9조 (중재)

- “1.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에게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일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기일은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부터 10역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 내지 방어를 위한 입증책임을 진다. 중립적인 제3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ODR 규칙이 요구하는 사실에 그러한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 “3.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쟁을 검토하고 판정을 내려야 한다. ODR 제공자는 해당 판정을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며 해당 판정은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한다.
- “4. 중립적인 제3자는 해당 판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중재가 이루어진 시일과 장소를 적시하여야 한다.
- “4 bis. 제3항의 요건을 위하여:
 - (a) 서면으로 작성된 판정은 접근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이후의 참조를 위해 사용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 (b) 서명된 판정은 중립적인 제3자를 밝히기 위한 것이자 판정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그의 승인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로 사용되어야 한다.]
- “5. 해당 판정에는 반드시 그 판정이 내려진 근거를 간략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 “6. 판정은 [절차의 구체적 시점으로부터] 즉시 또는 가급적이면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6. bis. 판정은 법원 또는 기타 관할기관 이전에 법적 절차 내지 법적 권리를 추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적 의무로 인해 외부에 공개해야 할 경우 또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공개된다.
- “7. 해당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판정의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 “8. 모든 사건에서, 중립적인 제3자는 [형평과 선의 원칙]에 기초하여, 계약조항 내용에 따라,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당해 거래에 적용가능한 상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의 제27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제1항에서 언급한 제출시한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⁸⁷⁾ 실무작업반은 “촉진된 합의 단계의 만료”라는 조문이 초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통지의 10영업일 이내 합의에 실패한 경우로 제8조가 수정되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실무작업반은 이러한 시한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절차규칙에서 “서면”이 언급되고 정의되는 유일한 조항이 바로 판정의 요건과 관련된 초안 제9조 제4항 bis.이다. 실무작업반은 제27차 회의에서 사무국에 당사자들에 대한 통고 내지 특정 문헌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⁸⁸⁾ 그러나 온라인 분쟁 해결의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절차는 온전하게 온라인 환경 하에서만 이루어지고, UNCITRAL 기구들 역시 “서면”에 관한 생성 제한에서 점차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⁸⁹⁾ 이러한 측면에서 절차규칙에

87) A/CN.9/769, paras. 85-86

88) A/CN.9/769, para. 87

89)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 paragraph 2, and article

추가적인 삽입은 없다.

제27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장래의 회의를 위하여 제8항에 “형평과 선의 원칙(ex aequo et bono)라는 문구를 대괄호 안에 넣고, 추가적 제의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초안 제9조 bis. (판정의 정정)

“판정의 수신 이후 [5]역일 내에 당사자 일방이 중립적인 제3자에게 중재의 계산 오류, 사무적 오류, 오자, [유사한 성질의 누락, 기타 모든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중립적인 제3자가 당해 요청이 정당하다고 여긴 경우, 그는 요청 수신 후 [2]역일 이내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정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정은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고] 판정의 일부를 이룬다. [중립적인 제3자는 판정의 전달 후 [5]역일 이내에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초안 제9조 ter. (내부 심사 방법)

“[1. 당사자 일방은 판정의 통지 후 10역일 이내에, ODR 플랫폼을 통하여 ODR 제공자에게 (a) 중재의 장소가 당사자에게 불공정하게 편향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b) 정당한 절차를 밟을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절차규칙의 근본에 심각한 일탈이 있음을 이유로 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ODR 제공자는 5역일 내에 당해 요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i) 당해 요청의 대상이 되는 ODR 절차와 무관하고 (ii) ODR 제공자가 관리하는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속한]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가 지명되면, ODR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그 지명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V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adopted by UNCITRAL on 7 July 2006.

“[3.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된 지 7역일 이내에 당해 취소요청에 대한 중국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판정이 무효화되면, ODR 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중립적인 제3자가 지명된다.]”

초안 제10조 (절차의 장소)

“[ODR 제공자는 절차규칙의 [Track I] 부록에 적시된 목록 중에서 절차의 장소를 선택한다.]”

7) 총칙 규정

초안 제11조 (ODR 제공자)

“[ODR 제공자는 분쟁해결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초안 제12조 (절차상 언어)

“[1. 당사자의 합의의 대상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지명 이후 즉시 [제[x]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고려하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 또는 언어들을 결정해야 한다.]

“2. 아래 제3항에 따라 실패한 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은 반드시 (본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합의된) 절차상 언어로 제출되어야 하고, 한 언어 이상의 절차상 언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언어여야 한다.

“3. ODR 절차 과정에서 통신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및 보충문서 내지 제출물은 그 내용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언어로 제출될 수 있다.

“4. 분쟁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나 제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해당 서류나 제출물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당해 서류를 [타방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다른 절차상 언어] [실패한 경우, 타방 당사자가 자신의 통지 내지 응답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포함시킨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초안 제13조 (대리)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보조한다. 그의 이름이나 지정된 전자주소 [및 수권행위]는 반드시 ODR 제공자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초안 제14조 (책임의 예외)

“[국제적 범죄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허락하는 모든 한도 내에서, 이 규칙 하의 ODR 절차와 관련하여 생략된 부분이나, 기타 법을 기반으로 한 ODR 제공자 및 중립적인 제3자를 향한 모든 신청을 포기한다.]”

초안 제15조 (비용)

“[중립적인 제3자는 비용에 관한 어떤 [결정] [판정]도 내려서는 안 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부속서 X

[이 규칙에 포함되는 법제의 목록은 이 부속서에 있는 바와 같다.]

위 문단 1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무작업반이 제27차 회의에서 결정한 “두 가지 트랙 병존방식 제안”에 따라, 부속서가 구성되었다.

문체 측면에서, 실무작업반은 초안 전문과 부칙과 함께 부속서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고, 두 가지 문서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 Track II에 관한 실무문서 123/Add.1 번역

(1) 서 론

사무국은 실무문서 123을 사전 공개한 후, 이 문서의 추록문서인 123/Add.1을 공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추록문서가 원 문서를 보충하는 형태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문서 123과 123/Add.1이 각각 Track I과 Track II를 별도로 독립적인 체계로 구성한다는 점을 볼 때 이 문서 역시 추록문서가 아닌 별도의 독립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사무국은 실무문서 123, 그리고 제27차 회의 사전문건인 실무문서 119에서 Track II에만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따로 적시하기 위하여 본 문서를 추록문서의 형태로 발간하였다. 즉 Track I과 Track II가 겹치는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되게 한 기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무국 역시 적용가능한 선에서 실무문서 119와 123의 내용이 123/Add.1에도 동시에 적용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Track II의 조문에서 중재단계의 부채를 감안할 때 보다 큰 유연성을 위하여 어떤 조문이 단순화되거나 일원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하의 초안 전문 및 제1조 내지 제13조는 오직 절차규칙 Track II만을 구성한다.

(2) 조문 초안 검토

1) 전문 및 도입규정

초안 전문

“1. UNCITRAL의 온라인 분쟁해결 규칙(이하 ”규칙“)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국경을 넘어선 소액의 대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2. 규칙은, [규칙에 부속된 부칙과] 규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문서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분쟁해결 구조와 함께 사용된다:

[(a) 온라인 분쟁해결 제공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

[(b) 중립적인 제3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

[(c)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리들;]

[(d) 국경을 넘어선 강제집행 방법;]

[…];

“[3. 별개 및 추가적인 모든 [규정들][문서들]은 당해 규정과 부합해야 한다.]”

초안 제1조 (적용 범위)

“1. 본 규칙은 거래 시점에 전자통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 거래와 관련되며 본 규칙의 범위에 포함되는 분쟁은 규칙에 따라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경우 적용된다.

[“1a. 본 규칙은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부칙 X에 적시된 국가의 소비자인 경우, 분쟁 사후에 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1 bis. (1)항에 상술된 분명한 합의는 당해 거래로부터 분리된 합의와, 당해 거래에 관련되고 ODR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분쟁은 ODR 규정에 따라 ODR 절차[그리고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될 Track I 또는 Track II]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해결될 것임이 매

수인에게 평이한 언어로써 공지될 것을 요한다.” (“분쟁해결조항”)]

[“2. 본 규칙만이 신청에 적용된다:

- (a) 매매 또는 임차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전혀 인도되지 않거나, 적시에 인도되지 않거나, 제대로 청구되거나 결제되지 않거나, 및/또는 거래 당시에 합의한 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b)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온전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본 절차규칙은 이 규정들 중 어느 부분이라도 당사자들이 해당 규정이 우위에 있다고 다룰 수 없는, ODR 절차가 준거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DR 절차를 규율한다.]

실무작업반은 제3항 선택조항 1이 실무문서 119에는 있으나 여기서는 삭제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절차규칙의 Track II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안 제2조 (정의)

“절차규정을 위하여:

ODR

- “1. ‘ODR’은 전자통신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촉진된 분쟁해결 방법인 온라인 분쟁해결을 의미한다.
- “2. ‘ODR 플랫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ODR에서 사용되는 전자통신을 생성, 전송, 수신, 저장, 교환 또는 처리하는 시스템인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의미하며, 이는 ODR 절차에서 ODR 제공자가 지정한다.
- “3. ‘ODR 제공자’는 [ODR 플랫폼을 지정하고], ODR 플랫폼의 관리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

사자들의 ODR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체인 온라인 분쟁해결 제공자를 의미한다.

당사자

“4. ‘신청인’은 통지를 발부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ODR 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5. ‘피신청인’은 당해 통지를 수신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TBD: To be discussed; 논의필요사항]

“6. ‘중립적인 제3자’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돕거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개인을 의미한다.

통신

“7. ‘통신’이란 ODR과 연관되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누구든 진술, 선언, 요구, 통지, 응답, 제출, 통고 또는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8. ‘전자통신’이란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누구든 전자, 자기(magnetic), 광학은 물론 EDI, e-mail, 텔레카피, SMS, 웹컨퍼런스, 온라인 채팅, 인터넷 포럼 또는 마이크로블로깅을 포함하되 한정하지 않는 유사 수단에 의하여 발생,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수단을 통하여 통신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컴퓨터나 다른 전자 기기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 혹은 변형된 문서 객체나 사진, 글, 소리와 같은 아날로그 형식의 정보도 포함한다.

초안 제3조 (통신)

“1. ODR 절차 과정 중의 모든 통신은 ODR 제공자가 지정한 ODR 플랫폼을 통하여 ODR 제공자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

다. [ODR 플랫폼의 전자 주소는 분쟁해결조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 “2. 각 당사자가 이 규칙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거래 관련분쟁에서 ODR 을 이용하기로 명백한 합의가 된 때] 반드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전자 접근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 “3. 절차규칙 하에서의 모든 통신을 할 목적으로 한 신청인의 지정된 전자주소는, 반드시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ODR 제공자에게 통지된 것이어야 하며, ODR 절차 도중에 어느 때라도 ODR 제공자에게 최신 정보로 갱신된 것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통지할 때 전자 주소를 최신으로 갱신한 것을 포함한다.)
- “4. ODR 제공자가 피신청인에게 하는 통지를 전달할 전자 주소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제2항의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ODR 제공자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 통지의 발신 이전에 신청인이나 ODR 제공자가 최신 정보로 갱신한 것이어야 한다. 이후로, 피신청인은 ODR 절차 도중 어느 때라도 ODR 제공자에게 자신의 전자 주소 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 “5. ODR 제공자가 당사자들에게 제6항의 능력을 통지하고, 제1항에 따라 통신이 ODR 제공자에게 제출된 경우 이는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수신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통신을 수신하는 데 실패한 경우 그가 타당한 이유를 밝힌다면, 중립적인 제3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6. ODR 제공자는 즉시 모든 당사자[및 중립적 제3자]에게 지정된 전자 주소로, 당사자들과 중립적인 제3자 간의 전자적 통신의 수신을 확인하였다고 전달하여야 한다.
- “7. ODR 제공자는 모든 당사자들 및 중립적인 제3자에게 ODR 플랫폼에서 모든 전자적 통신이 가능함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8. ODR 제공자는 절차에서 협상 단계의 결과 및 촉진된 합의 단계의 개시를 당사자 및 중립적인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절차의 촉진된 합의 단계 만료 역시 마찬가지이며; 관련된 경우 절차의 권고 단계 개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8항에 대하여 제27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Track II 절차의 마지막 결과로 중립적인 제3자가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내리는 것을 기초로 한 절차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초안 제8조와 관련된 당해 논의는 필연적으로 제8조 bis.와 관련되어있기도 하다.⁹⁰⁾

실무작업반은 나아가 절차규칙이 ODR 절차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비록 이는 구체적으로 Track I 절차의 다양한 단계와 연결되어 요청된 것이지만, 실무작업반은 본항이 Track II 절차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나아가 제8항이 실무작업반의 고려를 위해 삽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⁹¹⁾

2) 절차의 개시

초안 제4A조 (통지)

“1. 신청인은 제4항에 포함된 양식에 따라 통지를 ODR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해 통지는 가능한 한 신청인이 의존하는 모든 문서 및 다른 증거들과 동반되거나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그 후 그 통지는 ODR 제공자에 의하여 즉시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것이다.][ODR 제공자는 그 통지를 ODR 플랫폼에서 접할 수 있음을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90) A/CN.9/769, para. 56

91) A/CN.9/769, paras. 46-47, para. 84, paras. 86-87

“3. 제1항에 따라 ODR 제공자에게 통지가 전달되고 ODR 제공자가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능력을 통지한 때, ODR 절차가 개시된[것으로 간주한]다.

“4.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주소; 당해 ODR 절차에서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 주소;

“(b) 피신청인의 이름과 전자 주소; 신청인에게 알려진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전자 주소;

“(c) 당해 신청의 배경;

“(d)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해결책;

“(e) 신청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와 관련한 특정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현재 다른 구제 방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

[“(f) 신청인의 주소];

[“(g) 신청인이 선호하는 절차상 언어];

“(h) 신청인 및/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의 여타 모든 신분 증명, 인증 방법을 포함한 전자 양식의 서명;

“[...]”

초안 제4B조 (응답)

“1. 피신청인은 ODR 제공자에게 제3항의 내용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수신했음을 전달해야 한다. 당해 응답은 가능한 한 피신청인이 의존하는 모든 문서 및 다른 증거들과 동반되거나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선택조항 1 : 피신청인은 통지에 대한 응답과 함께, 신청인이 통지에서 밝힌 거래와 동일한 것에 대해 ODR 제공자에게 동일한 ODR 플랫폼을 사용하여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대신청’)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통지가 ODR 제공자에게 접수된 후 [7]역일 이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ODR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과 반대신청은 함께 다뤄져야 한다.]

[반대신청은 제4A조의 제4항 (c)호와 제4항 (d)호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선택조항 2: “피신청인은 통지와 함께 ODR 제공자에게 반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반대신청'이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으로,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ODR 제공자에게] 한 통지와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다.”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통지가 ODR 제공자에게 접수된 후 [7]역일 이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ODR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과 반대신청은 함께 다뤄져야 한다.]

[반대신청은 제4A조의 제4항 (c)호와 제4항 (d)호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3. 응답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a) 피신청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 주소; ODR 절차 내에서 응답자를 위해 행동하도록 허가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이름과 지정된 전자주소;

“(b) 통지에 적시된 당해 신청의 근거에 대한 응답

“(c)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해결책;

“(d) 피신청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와 관련한 특정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현재 다른 구제 방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

“[(e) 피신청인의 거소];

“[(f) 신청인이 위 제4A조 제5항 (g)호에 따라 제시한 절차상 언어에 동의하는지, 또는 선호하는 다른 절차상 언어가 있는지 여부;]

“(g) 피신청인 및/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의 여타 모든 신분 증명, 인증 방법을 포함한 전자 양식의 서명;

“[...]

3) 협 상

초안 제5조 (협상 및 합의)

협상

- “1. [제4B조에 따라 응답[과, 해당되는 경우 반대신청]을 ODR 제공자[와, 해당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전달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ODR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통신 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시도해야 한다.]
- “2. 만일 피신청인이 제4B조 제3항의 형식에 합치하도록 ODR 절차 개시 7역일 이내에 ODR 제공자에게 응답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되며, ODR 절차는 자동으로 촉진된 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ODR 제공자가 제6조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에 따라 즉시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 “3. 만일 당사자들이 10역일 이내에 응답[및 그 신청인에 대한 통지]을 ODR 플랫폼에 제출하지 않아 협상을 통해 당해 분쟁을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ODR 절차는 자동으로 촉진된 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ODR 제공자는 제3조 제8항에 따라 즉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따라 즉시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 “4. [응답을 제출하기 위해][합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들은 1회의 시한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10역일 이상의 연장은 할 수 없다.

합의

- “5. [협상 단계 중] [및/또는 ODR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에 이르면, 해당 합의 조항이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서 ODR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4) 중립적인 제3자

초안 제6조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 “1. ODR 제공자는 [ODR 제공자가 보유하는 중립적인 제3자의 책임자 명단에서 선택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지명해야 하고, 각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명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2.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절차규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의 수행과 완료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중립적인 제3자는 지명 수락 당시에 자신의 독립성을 선언하고, ODR 제공자에게 자신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이 생길만한 상황을 밝혀야 한다. ODR 제공자는 각 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는 그의 지명 당시부터 ODR 절차 동안 지체 없이 ODR 제공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밝혀야 한다. ODR 제공자는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4. 당사자 일방은 중립적인 제3자의 (i) 지명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역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또는 (ii)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주의가 중립적 제3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실이나 상황을 적시하여, 지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반대

- “5. 일방의 당사자가 위 제4항 (i)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중립적인 제3자는 자동으로 결격이 되고, 제6조 bis.에 따라 교체된다. 각 당사자는 각각의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임명의 통지에 대한 최대 [3]번의 이의제기 기회를 가지게 되고, 위 제4항 (ii)의 대상이 되는 ODR 제공자에 의한 중립적 제3자의 다음 지

명이 마지막으로 될 것이다. 대신 2일 이내에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명이 최종지명이 되어 위 제4조 (ii)의 대상이 될 것이다.

6. 당사자 일방이 위 제4조 (ii)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해 ODR 제공자는 [3]역일 이내에 당해 중립적인 제3자가 교체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보 제공에 대한 반대

- “7. 일방의 당사자는 협상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ODR 제공자가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역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일의 기간이 만료되고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ODR 제공자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ODR 플랫폼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의 수

- “8. 중립적인 제3자는 한 명으로 한다.”

실무작업반은 제27차 회의에서 초안 제6조가 Track I과 Track II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바 있다. 특히 Track II에서는 그 자체가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과 관련하여 더욱 단순화하고 일원화한 접근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⁹²⁾

위에 적시된 초안 문장은 현재 실무작업반이 고려중인 Track I 문언을 반영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은 Track II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이 어떻게 더 단순해질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고, 특히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과 관련하여 Track II 절차가 바람직하거나 요구되는 것이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고려해야 한다.

92) A/CN.9/769, para. 107

초안 제6조 bis. (중립적인 제3자의 사임 내지 교체)

“중립적인 제3자가 절차 도중에 스스로 사임하거나 또는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ODR 제공자는 ODR 플랫폼을 통해서 제6조에 따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중립적 제3자를 지명한다. 절차는 중립적인 제3자가 교체되면서 자신의 기능 수행을 중지한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만일 초안 제6조가 Track II와 관련된 제안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면, 중립적인 제3자의 교체 내지 사임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초안 제7조 (중립적인 제3자의 권한)

- “1. [ODR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요건과] 절차규칙의 대상이 되는, 중립적인 제3자는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ODR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1. bis. 절차규칙 하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제3자는,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 소모를 피하며 분쟁해결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ODR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면서, 중립적인 제3자는 언제나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 “2. 제6조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들과 ODR 제공자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ODR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 관련성은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ODR 절차는 중립적 제3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 “3. 절차과정 중 언제라도 중립적 제3자는 (비용에 대한 조건 혹은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적인 정보, 서류, 제출물 기타 증거의 제공을 [요구][요청] 또는 허용할 권한이 있다.

- “4. 중립적인 제3자는 분쟁을 ODR로 처리하는 것을 언급하는 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그 자신이 속한 법제에 따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분쟁해결조항은 당해 계약의 다른 조항과 독립된 합의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립적인 제3자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분쟁해결조항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5.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절차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통지를 수신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그 수신에 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칙에 규정된 시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ODR 절차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전달을 받은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그 수신에 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칙에 규정된 시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5) 촉진된 합의

초안 제8조 (촉진된 합의)

- “1.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이 합의 (“촉진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시도하도록 의사소통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합의 계약에 이르면, 그러한 합의 계약이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 시점에서 ODR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2. 만일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이후로 10영업일 내에 자신들의 분쟁을 촉진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촉진된 합의 단계의 만료”), ODR 절차는 제9조에 따라 자동으로 중재로 넘어가게 되고, 당해 ODR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제3조 제8항에 따라 절차가 합의 단계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즉시 통고해야 한다.

초안 제8조 bis.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권고)

- “1.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들에게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일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기일은 촉진된 합의 단계가 완료된 때부터 1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 내지 방어를 위한 입증책임을 진다. 중립적인 제3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ODR 규칙이 요구하는 사실에 그러한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 “3. 중립적인 제3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쟁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ODR 제공자는 해당 권고를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며 해당 판정은 ODR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한다.
- “4. 해당 권고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권고에 따르기를 권장하며, ODR 제공자는 신뢰마크의 사용 내지 당해 권고의 수용을 증명하는 기타 방안을 소개할 수 있다.”

실무작업반은 제27차 회의에서, 초안 제8조 bis.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가 내리는 구속력 없는 결정을 일컬어 “권고”라고 부르기로 했다.⁹³⁾ 그에 따라 본조의 법 문언이 수정되었다.

제8조 bis.는 현재 “촉진된 합의”라는 일반표제 하에 놓여있다. 실무작업반은 본 조문에 관해 별도의 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대하여, 실무작업반은 “촉진된 합의 단계의 완료”라는 조문이 초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에 대한 통지의 10영업일 이내 합의에 실패한 경우로 제8조가 수정되었음에 주목해야

93) A/CN.9/769, para. 58

한다. 실무작업반은 이러한 시한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제4항의 두 번째 문장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명확하며, 중립적인 제3자 내지 ODR 제공자가 이를 유지하는데 충분히 명확한지를 고려할 수 있고, 내지는 이 조항이 ODR 제공자와 중립적인 제3자를 위한 지침에 포함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6) 총 칙

초안 제11조 (ODR 제공자)

“[ODR 제공자는 분쟁해결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초안 제12조 (절차상 언어)

“[1. 당사자의 합의의 대상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는 그 지명 이후 즉시 [제[x]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고려하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 또는 언어들을 결정해야 한다.]”

“2. 아래 제3항에 따라 실패한 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은 반드시 (본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합의된) 절차상 언어로 제출되어야 하고, 한 언어 이상의 절차상 언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언어여야 한다.

“3. ODR 절차 과정에서 통신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 및 보충문서 내지 제출물은 그 내용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언어로 제출될 수 있다.

“4. 분쟁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나 제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는 해당 서류나 제출물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당해 서류를 [타방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다른 절차상 언어] [실패한 경우, 타방 당사자가 자신의 통지 내지

응답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포함시킨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초안 제11조 (대리)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보조한다. 그의 이름이나 지정된 전자주소 [및 수권행위]는 반드시 ODR 제공자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초안 제12조 (책임의 예외)

“[국제적 범죄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허락하는 모든 한도 내에서, 이 규칙 하의 ODR 절차와 관련하여 생략된 부분이나, 기타 법을 기반으로 한 ODR 제공자 및 중립적인 제3자를 향한 모든 신청을 포기한다.]”

초안 제15조 (비용)

“[중립적인 제3자는 비용에 관한 어떤 [결정] [판정]도 내려서는 안 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27차 회의에서 제시된 유럽연합의 입장이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트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찬성하였고, 이 입장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각 트랙별로 독립된 절차세트가 마련되어 제28차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입장은 아직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반대 입장이 강하므로 차후 회기에서 절차규정의 실제적 규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제27차 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의 참가국들이 사전에 입장을 정리하여 문건을 회의 초기에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발언에서도 유럽연합 국가들을 조정하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콜롬비아를 내세워서 주장을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각 진영에서 논의가 더 치열해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제27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의 교류 후에 발언이 이루어졌고, 이전회기와는 달리 바로 다음 날 전날의 논의사항이 정리되고 모든 참가자가 이를 수정한 후 외교부에 전달하였다.

제27차 회의를 통하여 4개 조문만 논의되었고, 아직 두 개의 트랙을 완성할 때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사전중재 합의의 유효성이라는 난제를 두 가지 트랙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소비자보호문제, ODR 절차 마련의 문제, 전자적 통신 및 플랫폼 구축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처의 입장이 공유된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지고, 전체 논의의 이해를 위하여도 다양한 부처의 참가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손현·이병준,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IV]-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2011)
- 오수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IV]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한국법제연구원(2011)

논 문

- 김선정, “온라인 상사분쟁해결방법의 법적 과제”, 『경영법률』 제17집 제1호(2006)
-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2012. 8.)
-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2013. 3.)
-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2008. 12.)